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4-17-⑨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차 현 숙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n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연구자 : 차현숙(연구위원)
Cha, Hyun-Sook

2014. 11. 30.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2008년 법률 제9006호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
- 전통무예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입법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전통무예 관련 현황
 - 전통무예의 개념 및 종류

- 전통무예의 관리 및 진흥 현황
- 전통무예의 관리 및 진흥 관련 문제점
-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 분석
 -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연혁 및 제정 배경 분석
 -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
- 입법대안의 검토 및 제시
 - 입법대안 A: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
 - 입법대안 B: 「국민체육진흥법」으로의 편입
 - 입법대안간 비교

Ⅲ. 기대효과

-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전통무예 진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사후적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 향후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 및 관련 분야의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주제어 :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전통무예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legislative evaluation study project in KLRI in 2014 is to conduct the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targeting the laws that have been three years since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and intends to evaluate the achievement of legislation goals.
- The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n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the 2008 Legislative Law No. 9006, is going to be conducted.
- Afte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the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intends to make sure that the goals of this Act have been achieved which are to contribute to the health promotion of national, the improvement of cultural life, and the culture-oriented state through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matters necessary to achieve the legislation goals of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and to provide the legislative alternative to be better legislative.

II. Main Contents

- Traditional Martial Arts-related current situation
 - Concept and types of Traditional Martial Arts
 - Management and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situation
 - Problems on management and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 Systematic analysis of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 Legislative history and enactment background analysis of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 Analysis of the achievement and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goals of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 Review and presentation of legislative alternative
 - Legislative alternative A : Revision of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 Legislative alternative B : Entry into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 Comparison between legislative alternatives

III. Expectation

- The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study on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

ment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and the settlement of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 From now on, this study will be taken advantage as basic data of the amendment of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and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of related fields.

➤ **Key Words : Legislative Evaluati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	11
I. 입법평가의 배경	11
II. 입법평가의 대상	12
III. 입법평가방법론의 선택	17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19
제 1 절 기초분석	19
I.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 및 입법배경	19
II. 검토보고서 분석	21
III.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입법현황	27
IV. 전통무예 관련 현황	34
V. 전통무예 관련 문제점	40
제 2 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	43
I. 체계성 분석	43
II. 입법목적 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	52
제 3 절 비교법적 분석	95
제 3 장 입법대안의 검토 및 연구의 한계	101

제 1 절 대안 A :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101
I.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의 방향성	101
II.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대안	104
제 2 절 대안 B : 「국민체육진흥법」으로의 흡수 방안	109
제 3 절 대안 비교 및 한계	111
I.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	111
II.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	112
III. 연구의 한계	113
참 고 문 헌	115

【부 록】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관련 조사	119
<부록 2> 수범자 실태조사 결과표	125

제 1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I. 입법평가의 배경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연구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법률 제9006호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은 법 제정 이후 2014년 현재¹⁾까지 수립되지 않은 등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생활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²⁾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무예

1) 2014년 7월 1일 기준.

2) 아시아뉴스통신, 이인제 의원, 한국무예현황과 혁신비전 국제무예포럼 개최, 2014년 6월 27일자 기사.

진흥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전통무예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입법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입법평가의 대상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전통무예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과 무예 관련 법령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우리나라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나. ①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제2조).
- 다.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제5조).
- 라.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이와 같은 「전통무예진흥법」의 주요 규정들이 입법평가의 대상이 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무예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p>제 1 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p>제 3 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p>제 2 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제 1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법 률	시 행 령
<p>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p> <p>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p> <p>5.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p> <p>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4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제 5 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p>	
<p>제 6 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 3 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p> <p>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p>

법 률	시 행 령
<p>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p>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제 1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법 률	시 행 령
	<p>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p> <p>4.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제 4 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p> <p>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부 칙 <법률 제9006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21365호, 2009.3.25.>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Ⅲ. 입법평가방법론의 선택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 예정하고 있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이라는 법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다양한 입법대안들 중에서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을 발견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과 무예 관련 법령간의 수평적 체계성검토, 「전통무예진흥법」의 수용성 및 효과성 조사, 진흥법의 일반적 구성과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과의 비교 등의 심사기준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규범론적 평가

규범론적 평가는 크게 목표달성도 심사와 규범체계성 분석이 그 내용을 이룬다.³⁾ 규범론적 평가를 위하여 먼저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연혁과 입법체계성 분석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입법안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개별 법령에 대한 입법대안의 하나로서 제안되어 있는 입법안들은 입법평가의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법사회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설문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는 법령의 각 규정들에 대하여 수용성 및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에 대한 방향성 및 추가적

3)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2007), 187면.

인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마련된 조사계획에 따라 수범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입법목적 달성도와 입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입법대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비교법적 연구

문화유산 중 특히 전통무예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제도에 대하여 비교하여 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법제 대안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4) 전문가자문 등의 활용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하여 전문가자문을 활용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통하여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는 한편, 입법대안에 대한 SWOT분석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 1 절 기초분석

I.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 및 입법배경

1. 입법배경 분석

「전통무예진흥법(안)」은 2005년 10월 12일 국회 이시종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31인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관련하여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통무술진흥법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4.10.7)이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2월 18일 상정되어 심의된 바 있다.

<전통무예 진흥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법 안 명	발의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비 고
전통무술진흥법안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2004.10. 7	2004.10. 8	2005. 2.18	2005.10.11 (철 회)
전통무예진흥법안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2005.10.12	200.5.10.13	2005.11.17	-

그러나 동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전통무술 지정과 관련한 일부 전통무술단체의 거센 반발 및 문화재보호법과의 상충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동 법안의 발의의원으로부터 동 법안의 철회요구가 문화관광위원회로 접수됨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동 법안에 대한 철회를 의결한 바 있으며, 이시종의원은 철회된 법안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2005년 10월 12일 「전통무예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

통무예진흥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에는 택견·씨름·격구 등 삼국시대 전·후부터 전래되어온 무예와 조선조 정조때 완성된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24반 무예,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래되어 온 무예 등 전통무예가 수십 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지키고 보급하는 전통무예인들도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단합시킨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는 전통문화임에도,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전통무예는 아무런 국가적 지원과 관심 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우리의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 찾기’ 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멋있게 이어갈 때가 왔다고 판단되어 전통무예진흥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제정연혁

2005년 10월 12일 제안된 후, 2005년 10월 13일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고 2008년 2월 22일 제271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수정가결 되었다.

이와 같은 경과로 추진된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06호로 제정되었으며, 2009년 3월 29일자로 시행되었다.

3.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이유⁴⁾를 밝히고 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이유 참조.

법률 제9006호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통무예의 정의(법 제2조제1호)

전통무예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함.

나.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등(법 제3조 및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하도록 함.

다. 전통무예단체 및 진흥무예지도자 육성 등(법 제5조 및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전통무예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II. 검토보고서 분석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2005년 11월 제출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⁵⁾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검토보고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필요성 및 배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2119 (2014년 9월 30일 검색)

「전통무예진흥법안」은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활동으로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전통무예의 경우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평가됨.

특히, LG투자증권 씨름단의 해단(2004. 12. 6)으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경기인 씨름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통무예 뿐만 아니라 전통 민속경기까지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진흥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봄

2. 전통무술진흥법안과 전통무예진흥법안 비교

기존에 제출되었던 「전통무술진흥법안」과 「전통무예진흥법안」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전통무술진흥법안 및 전통무예진흥법안 비교>6)

구 분	전통무술진흥법안(철회)	전통무예진흥법안(발의)
목 적	전통무술 <u>보존·진흥</u>	전통무예 <u>진흥</u>
진흥 대상	<u>전통무술</u>	<u>전통무예</u>
기구 신설	<u>전통무술심의위원회</u>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u>한국전통무예진흥회</u> (문화관광부장관 인가)

6) 전통무예진흥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8(김문희 수석전문위원 검토), 19면.

구 분	전통무술진흥법안(철회)	전통무예진흥법안(발의)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술의 지정과 해제 · 전통무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 전통무술 보존·진흥기본계획 수립 · 전통무술 보존·진흥 연구·조사 · 전통무술지도자의 교육·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예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집행
전통무술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술 보존 및 진흥의 기본 방향 · 전통무술 보존 및 진흥 조사·연구 · 전통무술단체에 대한 지원 · 전통무술 관련 자료의 수집 · 전통무술지도자의 교육·양성 · 전통무술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 전통무술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방향 · 전통무예 진흥 조사·연구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 ·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 ·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 전통무예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전통무술 지정 및 전통무술단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무술 지정 및 전통무술단체 인정 	없 음
전통무술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지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국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술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무예진흥회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

첫째, “전통무술”을 “전통무예7)”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둘째, 법안의 제정 목적8)에서 전통무예의 “보존”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문화재보호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였다. 셋째, 전통무술 지정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전통무술의 지정 및 전통무술단체의 인정 제도 도입은 전통무술 종목간의 갈등과 분열을 오히려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전통무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전통무술 지정 및 전통무술단체 인정 제도를 전면 삭제하는 대신, 민간 기구의 성격을 갖는 “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설립9)을 통하여 전통무예단체 차원의 자율적인 전통무예 진흥 활동을 보장하되, 이에 필요한 경비를 국

-
- 7) 전통무예진흥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
 - 8) 전통무예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전통무예진흥법안 제6조(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설립) ① 전통무예의 진흥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통무예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등
 2.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무예의 종목별·지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③ 진흥회의 회원 및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에 회장 1인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⑤ 진흥회의 회장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회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진흥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⑨ 진흥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¹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3.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¹¹⁾

현재 국민의 체력 증진 및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경기종목 및 경기단체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문화관광부 소관 체육 관련 법률 중에서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전통무예의 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전통무예가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체육적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전통무예의 원형 보존에 가치를 둘 경우 「문화재보호법」으로 흡수가 가능하며,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진흥이라는 체육적 가치에 무게를 둘 경우에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의 틀에서 흡수가 가능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전통무예의 문화적·체육적 가치>

전통무예		근거 법률		정책 기능
문화적 가치	⇒	문화재보호법	⇒	전통무예의 원형 보존
체육적 가치	⇒	국민체육진흥법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진흥

결국,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별도 개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전통무예의 체육적 가치와 진흥의 필요성, 여타 전통문화(전통음악·미

10) 전통무예진흥법안 제7조(진흥회 등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회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1) 전통무예진흥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8, 22~23면.

술, 음식 등)와의 형평성 및 전통문화의 종합적인 진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4. 소 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검토보고서에서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개별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전통무예의 체육적 가치와 진흥의 필요성, 여타 전통문화(전통음악·미술, 음식 등)와의 형평성 및 전통문화의 종합적인 진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별도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개별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시행 이후 전통무예 진흥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수범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5년 제출되었던 원안(의안번호 2907)에는 전통무예의 진흥활동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경비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이 규정은 삭제되었다. 지원·진흥법안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원·진흥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 것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Ⅲ.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입법현황

1.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관련 입법현황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4차례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관련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의안번호	제안 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현 황	비고(검토의견서)
1805826	2009.9.1	이시중 의원 등 12인	-전통무예의 진흥 활동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 통무예진흥회 를 설립하고 한국전통무예 진흥회의 경 비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 자 치 단 체 가 보조할 수 있 도록 함(안 제 7조 및 제8조 신설).	-2009년 9 월 2일 문 화 체육 관 광 방송 통 신 위원 회 회 부 -2011년 4 월 18일 제 299회 국회 임시회 제 4차 전체회 의 상정 -임기만료 폐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 계획 및 세부시행계 획의 수립을 위한 조 사·연구와 그에 따른 사업의 집행을 위하 여 한국전통무예진흥 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경비를 보 조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규정 -국가의 전통무예 관 련 정책의 안정적 추 진이라는 면 및 전통 무예의 활성화를 도 모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짐 -별도의 법정법인을 설 립하는 경우의 장단 점을 고려하여 불 때 유관연구기관 및 학 회 등 현재 활동 중 인 전통무예 관련 단 체를 통해서 수행하 는 것이 적절함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의안번호	제안 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현 황	비고(검토의견서)
1807822	2010.3.8	이시종 의원 등 14인	<p>-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p> <p>-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p>	<p>-2010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p> <p>-2011년 4월 18일 제299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상정</p> <p>-임기만료 폐기</p>	<p>-“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p> <p>-무예단체의 분열과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무예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로 인한 전통무예의 원형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p> <p>-「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에서 “전통무예”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 종목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의안번호	제안 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현 황	비고(검토의견서)
					-개정안에서는 전통무예 “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전통무예 종목별로 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에는 전통무예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논의가 부족함 -“전통무예” 및 “원류적통자”의 개념 설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903310	2013.1.14	김을동 의원 등 11인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 원류적통자를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올바른 계승 및	-2013년 1월 14일 제안 -2013년 1월 15일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회부(회송) -2013년 3월 29일 교육 문화 체	-개정안은 “전통무예 원류적통자”를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무예단체의 분열과 유사단체의 난립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의안번호	제안 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현 황	비고(검토의견서)
			<p>진흥에 기여하 고자 함(안 제 2조 및 제7조 신설)</p>	<p>육 관 광 위 원 회 회 부 - 2013년 12월 9일 제 320 회 국 회 제8차 전 체 회 의 상 정 - 위 원 회 심 사</p>	<p>으로 인한 무예계의 갈등 등 문제점(다음 표의 내용 참조)를 해결하고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서는 전통무예 “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전통무예 종목별로 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에는 전통무예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논의가 부족한 상황임. 아울러, 일부 택건을 비롯한 소수의 전통무예종목 이외에는 적통자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적통자를 지정할 경우 누가 심사를 하고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이냐 등 심사자격자와 심사기준 선정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p>
1905976	2013.7.15	김을동 의원 등 10인	-전통무예는 세계무형유산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의 전통무예가	-2013년 7월 15일 제안 -2013년 7월 16일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의안번호	제안 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현 황	비고(검토의견서)
			<p>지닌 다양성 및 포용성의 교류 가치는 세계 평화를 위한 효율적 수단이기도 함. 하지만 전 세계에 산재된 전통무예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구심점이 될 국제기구는 전무함.</p> <p>-이에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 2 신설)</p>	<p>육 관 광 위 원 회 회 부 -2014년 4 월 11일 제 32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전체 회의 상정 - 위 원 회 심사</p>	<p>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 차원에서 설립이 추진 중인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로서 상징적 지원은 유네스코에서 하지만 실질 운영은 해당국가에서 전담하는 카테고리II 유형의 센터임</p> <p>-2010년 2월 UNESCO에서 카테고리II 센터 설립을 충주시에 권고하여, 2011년 5월 충주시는 문체부를 통해 국제기구 설립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으며, 2013년 11월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음</p> <p>-국제무예센터의 주요 사업은 전통무예 교류 활성화 및 국제화를 위한 연구사업, 무예를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 청소년 교류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 전통 무예 보존과 진흥을 위한 대관 및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예정하고 있음</p>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의안번호	제안 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현 황	비고(검토의견서)
					-유네스코 카테고리II 센터는 전적으로 센터 운영국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불분명함 -개정안은 유네스코와의 협정체결 상황, 예산확보 방안과 전통무예진흥 관련 제도적 기반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관련 입법현황 분석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후 법이 전통무예의 진흥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수월하게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표와 같이 4차례의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2009년 첫 번째 개정안의 경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와 그에 따른 사업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전통무예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규정이다. 다만, 기존의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를 활용하도록 지정 등으로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의 개정안은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하면서 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 이후 전통무예 종목의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논란으로 전통무예 종목의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요건이나 지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1903310)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올바른 계승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무예단체의 분열과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무예계의 갈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2010년 개정안과 동일한 문제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이, 각 전통무예 종목별로 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에는 전통무예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3년 7월에 발의된 개정안(의안번호 19905976)은 전통무예는 세계 무형유산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의 전통무예가 지닌 다양성 및 포용성의 교류 가치는 세계 평화를 위한 효율적 수단임에도 전 세계에 산재된 전통무예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구심점이 될 국제기구인 전무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국제무예센터의 주요사업은 전통무예 교류 활성화 및 국제화를 위한 연구사업, 무예를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 청소년 교류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 전통 무예 보존과 진흥을 위한 대관 및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협정의 체결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에 제출되었던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안은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 법정 관련 단체 설립근거 마련, 국제무예센터 설립근거 마련 등 개별 사안에 따른 필요에 의하여 진흥에 필요한 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 제정된 이후 약 6년이 지나는 동안 전통무예의 진흥이라는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IV. 전통무예 관련 현황

1. 전통무예 현황

(1) 전통무예의 개념 및 종류

1) 전통무예의 개념

통상 무술은 싸우는 스포츠나 기술은 모두 포함하는 말이며, 주로 극동 지방에서 유래된 것이다. 쿵푸, 유도, 가라데, 검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¹²⁾

무예는 체력을 단련시키고 국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기를 다루는 기술로써, 국가적인 필요성 또는 민간에서 체력단련이나 놀이의 형태로 전승되어 왔으며, 중국에서는 술(術), 또는 법(法), 일본에서는 도(道)라고 한다.¹³⁾

“전통무예”의 개념은 명확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하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12)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 지도자양성 시스템구축 연구 제1부 전통무예진흥 기본 계획, 2013, 5면.

13) 체육과학연구원,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연구, 2009, 21~22면.

은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항).

또한 무예는 스포츠와 구별되는 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관계를 일원적으로 보는 동양적 세계관에서 기인하고 있다. 스포츠가 최고수준의 경기력 발현을 목표로 한다면, 무예는 궁극적으로 심신단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다양한 무술이 존재하고, 일부 무술은 고유의 특성을 지켜나가면서도 무술의 세계적 보급을 위해서는 주관조직을 창설하고, 경기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가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¹⁴⁾

“전통무예”의 개념정립과 관련하여 ‘무엇이 전통인가’, ‘어떤 기준으로 전통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 법에서 ‘전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등이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도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14)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103, 9면.

“전통무예”와 관련하여서 “전통”이 무엇인지 「전통무예진흥법」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을 유추할 수 있는 규정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있다. 동 조문에서는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와 관련해서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업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통무예가 복원되거나 시작된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 판단 기준으로서 장기간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 전통무예의 종류

학문적으로 무예는 무예의 내용 안에서 기원, 시간적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기준으로 전승, 복원, 창시, 외래 무예로 분류되며, 형태와 내용을 기준으로 맨손, 무기, 종합, 기타 무예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으로 국내에는 현재 340여개 전통무예단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예의 유형 및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¹⁵⁾

<무예의 유형 및 분류>

구 분	맨 손	무 기	종 합	기 타
전 승	택견, 씨름	국궁	-	-
복 원	수박	마상무예, 격구	십팔기 24반무예	-

15) 체육과학연구원,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연구, 2009, 27~28면.

구 분	맨 손	무 기	종 합	기 타
창 시	태권도, 권격도 금강승선관무 당수도 파한뒤투, 불무 도 선무도 수박도, 수벽 치기 아사흔, 원 화도 종합격투 기, 태격 통일 무도	검예도, 도법, 본국검, 심검도, 쌍절곤, 용담 검무, 육기검법, 청 응 문 검 술, 해동검도, 해동 도법, 화랑도법	경호무술, 국무 도 국술, 궁중 무술 기천문, 무적도 용무도, 정도술 통 천 절 권 도, 특공무술, 한기 도 한무도, 화 랑도 회전무술 효청무예 흑추 관무술	국선도 국학기공 무의단공
외 래	공수도, 무에타 이 삼보, 유도 까뽀에이라 크라쉬, 합기도	검도(Kendo) 스포츠찬	우슈, 합기도, 진가태극권, 쿵푸 태극권	전신기공

자료: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연구」, 체육과학연구원, 2009.

(2) 전통무예 관련 개념 비교

전통무예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개념으로 전승, 복원, 창시 등의 개념이 있다. 전승, 복원, 창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¹⁶⁾

16)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진흥 기본 계획, 2010, 10면.

전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대로 전하여 이어온 것으로 100년*간 3대 이상 전승되었고, 타인 및 타 무예에서 인정하는 것 * 유럽평의회 특별조사위원회(Working group of Council of Europe)에서는 ‘전통게임(traditional game)’을 정의할 때 10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대로 회복된 것으로서 복원 근거가 확실한 ‘무예제보’나 ‘무예도보통지’ 기타 고증할 수 있는 문헌 등을 통해 복원된 것
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시작되었거나 제창된 것으로서 전승된 것과 외부에서 유입된 것을 조합해 창시된 것

자료: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10. 12.

위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하되, 각 종목별로 누가 전승, 복원, 창시자인지에 대한 결정은 별도의 기준 내지 절차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향후 전통무예 관련 전승, 복원 및 창시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위의 기본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세부적인 기준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전통무예 단체 현황

(1) 전통무예 관련 단체 현황

2013년 대한체육회는 가맹된 경기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55개 정가맹단체와 3개의 준가맹단체(오리엔테어링, 카바디, 항공회)가 있고, 그 중 무술종목은 유도, 검도, 국궁(궁도), 태권도, 씨름, 공수도, 택견, 카바디 8개 종목이다.¹⁷⁾ 국민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전국종목별연합회는 2010년 현재 59개 종목이며, 이중 무예종목으로 분류 가능한 것은 궁도, 택견, 종합무술, 국무도, 합기도, 검도, 태권

17)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sports.or.kr/intro.jsp> 참조.

도, 우수, 씨름 연합회 총 9개이다.¹⁸⁾ 전통무예 관련 단체의 체육단체 가맹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전통무예 관련 단체의 체육단체 가맹 현황>

구 분	종목별 단체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	대한유도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검도회, 대한 궁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택견협회, 대한공수도연맹
국민생활체육회 가입 단체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종합무술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국무도 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합기도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 검도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우수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

(2) 전통무예의 전문체육 현황

전문체육이란 대학체육회 산하단체로 선수육성과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소속단체의 종목을 의미하며, 검도·태권도·유도·궁도·우슈의 5개 종목이 해당한다. 태권도 및 유도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 우슈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검도의 경우 세계선수권대회가 있다.¹⁹⁾ 전통무예 체육지도자 관련 자격검정 종목은 경기지도자로는 1급 및 2급의 자격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도, 궁도, 씨름, 우슈, 유도 등이 해당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2급과 3급의 자격검정이 행해지고 있으며 검도, 씨름, 우슈, 유도, 태권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통무예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종목의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18)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sportal.or.kr/index.do> 참조.

19)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013, 20면.

<전통무예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종목>20)

구 분	자 격	종 목	비 고
경기지도자	1급 및 2급	검도, 궁도, 씨름, 우슈, 유도, 태권도(레슬링, 복싱, 양궁, 펜싱)	50종목 중 6종목 (무술 포함 10종목)
생활체육 지도자	2급 및 3급 (1급은 운동처방분야)	검도, 씨름, 우슈, 유도, 태권도(권투, 레슬링)	42종목 중 5종목 (무술 포함 7종목)

V. 전통무예 관련 문제점

1. 전통무예 지원 관련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한 무예의 질적 성장 정체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는 해방이후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여 볼 때 뚜렷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다. 무예는 무예인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발굴 및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스포츠 종목의 중점 육성을 중심으로 체육발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부재하여 무예지도자 양성도 무예단체에 일임되어 있었다.²¹⁾ 이러한 환경에서 전통무예의 질적 성장도 정체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2. 유사단체 난립 등 무예계 갈등

1980년대 후반 들어 ‘전통’은 상업성을 가진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이로 인해 기존의 대다수의 무예들이 ‘전통’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신

20)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ports.re.kr> 참조.

21)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 기준틀 구성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2012, 4면.

흥무예단체들도 전통무예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전통무예가 나타나게 된 점은 양적인 면에서는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급조된 전통무예들은 정체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상업성으로 인한 전통무예의 양산이 이루어져 왔다.²²⁾ 이와 같은 무예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립이 곤란한 상황이며, 전통무예와 관련된 학문적 성숙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3. 「전통무예진흥법」상 기본계획 수립 부재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후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2010년),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기본지침개발’(2011년), ‘전통무예지도자 연수 교재 개발 및 보급’(2012년)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마치고, 2013년부터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목지정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²³⁾ 그러나 2014년 6월 27일 아시아뉴스통신의 보도²⁴⁾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는 무예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우리나라 전통무예인 택견이 세계최초로 2012년에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무예에 대한 세계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태권도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씨름진흥법 등 무예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예인들과의 소통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계획마저도 발표되지

22)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013, 30면.

23) 무카스, 무진법… 전통무예지도자 종목선정 기준안 제시 될 듯, 2013년 2월 13일자 기사(https://www.mookas.com/media_view.asp?news_no=14446, 2014년 10월 31일 검색) 참조.

24) 보다 자세한 기사의 내용은 아시아뉴스통신, 이인제 의원, 한국무예현황과 혁신비전 국제무예포럼 개최,, 2014년 6월 27일자 기사(<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677236&thread=11r02> 2014년 10월 31일 검색) 참조.

않는 등 정부의 정책은 제한적이다.”고 하고 있다. 즉 2014년 6월말까지도 여전히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앞서 살펴본 무예계의 갈등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기본계획의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는 현상은 전통무예의 진흥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정책적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전통무예진흥법」상 실질적인 지원방안 부재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 제정되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이 내재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 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역할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우리 전통무예에 대한 명확한 인증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무예인 및 무예단체 간의 상호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무예계 상호간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전통무예진흥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제정비 및 행정전달체계 구축, 무예도장운영의 합리화, 전통무예인증제 도입 등의 우리 무예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체계정비가 필요하다.

5. 전통무예의 분류 기준 부재

입법체계상 전통무예의 보존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진흥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의 경우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정의

에 따라 전통무예로 포함되어 진흥의 대상이 된다. 택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바,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바 있다. 택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통무예”로서 지원, 진흥의 대상이 되려면 전통무예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통무예진흥법」에서는 이러한 분류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 2 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I. 체계성 분석

1.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 분석

2008년 제정된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 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조문의 숫자가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련하여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기본계획 수립·전통무예단체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약 3조문이다. 목적 조항과 정의조항 및 국가의 책무는 실질적인 정책에 직접적 관련을 가지기 보다는 입법의 필수적 조문과 선언적 조문들이다. 즉 국가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기본계획의 수립, 전통무예단체 육성,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의 세 분야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문의 구성으로는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 등 입법목적은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체육의 진흥과 같은 수준으로 진흥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진흥에 필수적인 규정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법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개별 진흥법의 입법체계 분석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 검토를 위하여 통상 진흥법이 갖추고 있는 조문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분석의 대상이 되는 진흥법의 선정은 분야별 대표성 및 「전통무예진흥법」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여부, “전통무예”와 같이 문화적 측면에서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11개의 진흥법의 구조를 살펴본다.

(1) 「건설기술진흥법」의 구조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률 제11998호). 이 법은 총 8장 9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 제1장 총칙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등
- 제3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 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 부칙

(2) 「관광진흥법」의 구조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률 제12689호). 「관광진흥법」은 총 7장, 8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진흥법」

- 제1장 총칙
- 제2장 관광사업
-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 제6장 보칙
- 제7장 벌칙
- 부칙

(3) 「국민체육진흥법」의 구조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률 제 12348호). 「국민체육진흥법」은 총 6장, 5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6장 보칙
부칙

(4) 「김치산업진흥법」의 구조

「김치산업진흥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률 제11459호). 「김치산업진흥법」은 총 4장, 2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김치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4장 보칙
부칙

(5) 「독서문화진흥법」의 구조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

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률 제11690호). 「독서문화진흥법」은 총 5장, 1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 제1장 총칙
- 제2장 독서 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장 삭제
- 제4장 독서 진흥
- 제5장 보칙
- 부칙

(6) 「문화예술진흥법」의 구조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률 제12354호). 「문화예술진흥법」은 총 6장, 4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 제1장 총칙
-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6장 보칙
- 부칙

(7) 「발명진흥법」의 구조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률 제11960호). 「발명진흥법」은 총 8장, 6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발명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발명의 진흥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8)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구조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률 제10002호).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총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 경쟁력강화 조치·지원 등
- 제7조 삭제 <2010.2.4>
- 제8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0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 제11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제12조 자금지원
- 제13조 사업자단체 설립
- 제1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5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제16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 제17조 청문
-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19조 포상
- 부칙

(9) 「씨름진흥법」의 구조

「씨름진흥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씨름진흥법」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씨름진흥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6조 협조
- 제7조 씨름의 날
- 제8조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 부칙

(1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라 한다)」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률 제12248호). 「태권도법」은 총 5장, 2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 제4장 태권도단체
- 제5장 보칙
- 부칙

(11) 「학교체육진흥법」의 구조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률 제11690호). 「학교체육진흥법」은 총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 제5조 협조
 -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 제7조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 제8조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제9조 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제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 등
 - 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
 - 제13조 스포츠강사의 배치
 - 제14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제15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 제16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 제17조 학교체육진흥원
 - 제18조 지역사회와 협력
 - 제19조 권한의 위임
- 부칙

3. 진흥법의 체계성 분석 결과

11개 진흥법의 입법체계를 분석한 결과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의 6개 조문은 일반적인 진흥법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진흥법은 목적규정, 정의규정, 국가 등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등 진흥관련 계획 수립 규정, 직접적인 지원·진흥방안 관련 규정,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관련 규정, 관련 단체에 관한 규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여 구울되고 있다. 이러한 점과 비교하면 「전통무예진흥법」은 기본계획, 단체 육성, 지도자 육성의 3개 조문이 직접적인 진흥에 관련된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육성·진흥이 가능하도록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II. 입법목적 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 달성도 및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전통무예진흥법」에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전통무예진흥법」의 주 수범자인 전통무예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통무예진흥법」의 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기획되었다.

1. 전문가 인터뷰 분석

「전통무예진흥법」에 관련된 전문가 5인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기존의 전통무예 관련 연구문헌 분석을 통해서 선정²⁵⁾한 전문가를 대상

25) 전문가 인터뷰의 대상이 된 전문가는 무예관련 협회의 사무총장, 무예 단체의 고

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 대상 전문가의 일부는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및 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인터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전문가에게 문의한 주요 질문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전통무예진흥법」이 입법목적에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점
-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선방향

각각의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른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A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 A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회, 문화재법상 문화재재단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정 단체에 대한 근거규정이 전통무예진흥법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A-1) 무엇이 전통인가에 관한 문제

- 문화재법상 동산을 기준으로 50년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는 전통무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
- 정의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

A-2) 개선안 관련

-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하나로 정의에 포함시키고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전통무예를

문번호사, 전통무예 관련 박사급 연구자 등이다. 무예단체가 난립하고 있고, 관련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무기명으로 의견을 제시받았음을 밝혀둔다.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안으로
생각됨

A-3) 과세/비과세 관련

-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로 분류되거나 학원법상 학원으로 분류
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전통무예의 경우 과세대상임

A-4) 전통무예진흥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체육진흥법 정도의 체계
를 갖추어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전문가 B는 전통무예 관련 단체의 난립이 「전통무예진흥법」의 시행
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전통무예에 대한
인증(검증)의 구체적인 주체가 필요하며, 법안에 책무만 있고 구체적
인 지원의 주체나 계획의 근거가 될 만한 세부적인 근거 규정의 마련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문화적 가치가 있고 전통적 가치가 있는 무예를 발굴하고 진
흥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득권 무예단체들의 입김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 그리고 무예라는 이름에 걸 맞는 무예 및
단체를 발굴하고 진흥할 수 있도록 해야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
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1) 전통무예 종목 선정 관련

- 종목자격기준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통성, 대중성, 가치성
에 대한 개별 종목별 명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종목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

B-2) 단체 지원 기준 관련

- 규격에 의해 맞추어 만들어진 조직보다 과거부터 자생력을 갖고
활동하는 진짜 단체를 찾아 규모가 작아도 법안에서 보호를 받으
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B-3) 주무부처의 기본계획 및 사업의 추진의지 필요

- 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계획 및 전통무예지도자연수교재 등 전통무예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나, 정작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 및 사업의 실행을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실행이 시급함.

전문가 C는 2008년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이 통과된 이후 6년이 흘러가는 동안 대한무도학회, 서울대학교,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전통무예진흥법」을 위한 한해 예산을 5천만원~1억원으로만 수년간 편성해옴으로써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점과 입법대안 마련의 방향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C-1) 문제점

- 전통무예진흥법이 전통무예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기여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정부기관과 무예인(무예단체)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으면 무예단체간의 세과시용의 연합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불필요한 경쟁만 부추기고 있음.
- 이러한 이유를 전통무예진흥법을 폐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좋은 취지로 어렵게 발의되어 통과된 법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프로젝트나 진행하고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무예발전을 위해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입법취지에도 적합한 것임.

C-2) 입법대안 마련의 방향성

-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이유나 목적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이어온 상무정신의 바탕인 전통무예를 계승하고 무예도보통지의 24반무예를 220여년 전에 편찬한 그 정신을 계승 및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오늘날 국민건강 증진과 문화생활향상이 라는 기조에 맞게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함.
- 그동안 정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된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보고서가 전통무예 종목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치우쳐져 있음으로 해서 많은 무예단체가 서로 종목지정을 받기위해 로비하고 항의하고 하는 불상 사나운 일들이 벌어졌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자들도 종목지정을 받으려면 종목 간에 단체통일을 해서 오라는 비현실적인 주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추겨온 면이 있음.
- 법 시행의 관점을 단체간의 자존심과 묵은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종목지정에 맞추는 것보다는 종목지정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갖추면 전통무예로서의 자격지정을 해주고 전통무예지도자 자격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 현장에서의 무예지도를 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그동안 전통무예보급을 위해 가장 큰 기여를 한 무예원로분들의 명예와 예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시급함.
- 국가재정의 원활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법 등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나 사업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단체규모가 적더라도 사업을 실행할 역량과 역사를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및 점검하여 관리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C-3) 「전통무예진흥법」 세부 개정 방안 제안

- 전통무예 원로 예우권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생 전통무예를 발굴, 복원해오신 원로분들의 노고에 대해 그동안 어느 단체나 기관도 관심을 두지 않은 게 현실이며 향후 전통무예진흥법의 기본 취지를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것이 무예원로 분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필요함.
- 국가표창 및 훈장 수여에 있어서 전통무예 원로 분들이 선정되어 민족사업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고 현재 경제적인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예라는 민족문화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관심으로 갖고 예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함.
- 전통무예를 보급해 오신 원로분들의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예술인복지법’수혜자에 무예부분을 넣든지 ‘전통무예인복지법’ 등을 마련하여 마땅한 집도 없이 평생 무예를 위해 헌신해온 원로분들이 마지막 여생을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종목지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 그동안 전통무예진흥법에 관한 정부의 프로젝트 보고서 내용이 종목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무예가 전통무예인지를 선정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제일 먼저 진행해야할 일로 규정함으로써 이후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 전통무예진흥법을 2005년도에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전통무예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커서였는데 결과적으로 두리몽실하게 정해서 2008년도에 통과시켰

는데, 다시 그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전통무예냐 아니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등 풀기 어려운 숙제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였음. 한마디로 풀기 어려운 숙제를 제일 먼저 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6년간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에는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종목 선정의 내용에 규모라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해동검도, 합기도, 국술 등 태권도를 제외하고 그런대로 큰 규모로 무예를 보급하고 있는 종목만 선정되는 그래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문화의 원형을 유지하거나 찾아가고 있는 소수 단체의 무예는 선정이 어렵게 만드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종목지정은 각 단체가 최소한의 조건-임의단체, 사회단체, 법인으로 활동한 지 5년 이상이 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을 갖추면 전통무예 종목으로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전통무예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전통무예 재정의 및 이중지원방지

-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전통무예에 대한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나 해방이후 형성된 우리 무예사를 보더라도 무예를 지속적으로 계승해오면서 그 무예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개념규정을 광범위하게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함.
- 다만 향후 무예단체(인)나 특정 사업에 지원을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법 등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나 단체(인)에는 국가재정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사용되지

않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공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전통무예지도자 교육 및 지원

- 전통무예지도자 교육은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처럼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여해서 도장의 관장, 사범들이 취득하는 시스템이라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이 선뜻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를 진흥한다고 만든 법에 의해 오히려 지역에 어렵게 무예를 보급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쌈지 돈을 받아 자격증 장사를 하는 모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선에 지도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정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전통무예지도자를 교육시킬 때 무예실기보다는 -위낙에 내용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기를 교육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음- 인성 및 교양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전통무예지도자 수료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방과 후 교사, 전통무예전수관 등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방과 후 무예지도교사, 지자체 문화센터 등에서 무예를 지도하는 강사, 전통무예전수관에서 무예를 지도하는 사범에게 최소한의 강의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자신의 활동역량에 따라 학생 및 수련생들에게 평가를 거쳐서 추가지원을 하는 게 전통무예지도자로서의 위상도 세워주고 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전통무예전수관(교육센터) 마련

- 전통무예를 보급하는 관장이나 사범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태권도와 같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회

원을 모집하고 비싼 월세 등을 들여서 도장을 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것임. 그래서 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지 못하고 문을 닫고 10~20년 무예를 해오다가 다른 직업을 찾아가는-무예만을 하다가 나이 30~40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마땅히 할 일도 많지 않음-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음.

-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통무예전수관(교육센터)을 설립하고 매일 시간단위로 전통무예 종목을 지도할 수 있는 전통무예지도자를 모집해서 심사를 거쳐 강사로 채용하고 지역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무예를 배울 수 있고 강사는 안정적인 강사료를 지원받아서 자신의 전통무예를 지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가능하다면 그 공간에 함께 쓸 수 있는 전통무예 사무실도 마련해줘서 전통무예 대중화 사업 및 보급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급선무임.
- 당장 예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통무예전수관을 건립하기가 힘들다면 기존의 활용도가 낮은 청소년수련관이나 각종 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전통무예전수관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무예수련의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함.

전문가 D는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하여 시행의지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 법 자체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제정 후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것은 법 보다는 그 법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의 의지부족이 주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세부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D-1) 전통무예 관련 법정 법인을 설립하여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음

- D-2) 현재의 전통무예진흥법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잊혀져가거나 명맥만 유지한 채 실전되어가는 무예들에 대한 발굴대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D-3)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그에 따른 교육연수원, 그리고 전통무예지도자에 알맞은 특화된 교육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검토
- D-4) 전통무예의 경우 중앙부처 외에 지방행정단위에서는 담당부서가 전무함. 특히 전통무예의 경우 지역특성에 따라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 다수임에 지역특성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과 무예에 대한 접근기회의 지역 간 형평성의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 행정단위별로 무예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 필요.

전문가 E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전통무예를 알리고, 심신수양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무예가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1) 교육/자격증 관련

- 전통무예지도자를 교육시킬 때 인성 및 교양 교육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교육에 그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2) 종목선정 관련

- 투명하고 공정한 종목선정과 실질적인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

E-3) 이중지원의 방지

-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법 등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전통무예 관련 단체나 사업에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E-4) 전통무예 유형 및 분류체계 재정립 필요

- 현재 다수의 용역에서 제시된 전통무예의 유형 및 분류체계의 논란이 있어 전승, 복원, 창시, 외래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분류체계와 유형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 재정립 필요

E-5) 특수 공무 직종 내 전통무예 이수 제도화 추진

- 군대, 경찰청 및 교정기관 등에 우리나라 전통무예 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 부여로 우리나라 전통무예 수련자의 사기양양과 전통무예 전공자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다양성부여 필요
- 이상과 같은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에서 개선방안 등 질문지 마련에 참조하였다.

2.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1) 조사설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하여 입법목적 달성도와 효과성을 평가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에서 나타난 「전통무예진흥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는 전통무예 관련 종사자 100명의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유효표본은 47개이며, 리스트를 통한 샘플 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기반의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 2 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모집단	전통무예 관련 종사자 100명
표본크기	유효표본 47명
표본추출	리스트를 통한 샘플 추출
조사방법	온라인을 통한 웹서베이
조사기간	2014년 11월 10일~11월 14일 (5일간)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2) 조사 내용

구 분	세 부 항 목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점 ·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의 목적 달성 적합도 ·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문 포함 - 전통무예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 -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대한 세부시책 마련 ·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점 ·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선사항
전통무예진흥법 정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예 구체적인 대상 명시에 대한 생각 · 전통무예진흥법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재정비의 필요성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구 분	세 부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세부규정 정립에 대한 생각 · 전통무예진흥법에 추가되어야 할 규정 ·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의견

3) 응답자 구성

전통무예의 특성상 관련 종사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97.9%였으며, 연령은 50세 이상이 57.4%, 40대가 31.9%, 30대가 8.5% 순으로 나타났다.

Base=전체	사례수 (명)	비 율 (%)
▣ 전 체 ▣	(47)	100.0
성 별		
남 자	(46)	97.9
여 자	(1)	2.1
연 령		
20대	(1)	2.1
30대	(4)	8.5
40대	(15)	31.9
50세 이상	(27)	57.4

(2) 조사결과 개관

조사결과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44.7%로 나타났다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51.1%)’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전통무예 진흥에 대

한 기본계획 수립(27.7%)’,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대책(17.0%)’,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 방안 수립(4.3%) 순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입법대안의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문제점이 있다 44.7%. 없다 19.1%**

- 전체 응답자의 93.6%가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응답은 44.7%로 문제점이 없다는 응답(19.1%)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선사항으로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51.1%)’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27.7%)’,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대책(17.0%)’,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 방안 수립(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93.6
	보통임	4.3
	잘 모름	2.1
현 전통무예 진흥법 문제점	문제 있음	44.7
	보통임	36.2
	문제없음	19.1
현 전통무예 진흥법의 목적 달성 적합도	부적합함	23.4
	보통임	34.0
	적합함	42.6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전통무예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문이 모두 포함되었다	긍정	25.5
	보통임	38.3
	부정	36.2
전통무예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긍정	19.1
	보통임	31.9
	부정	48.9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긍정	19.1
	보통임	40.4
	부정	40.4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긍정	19.1
	보통임	23.4
	부정	57.4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대한 세부시책이 마련되어 있다	긍정	14.9
	보통임	27.7
	부정	57.4

제 2 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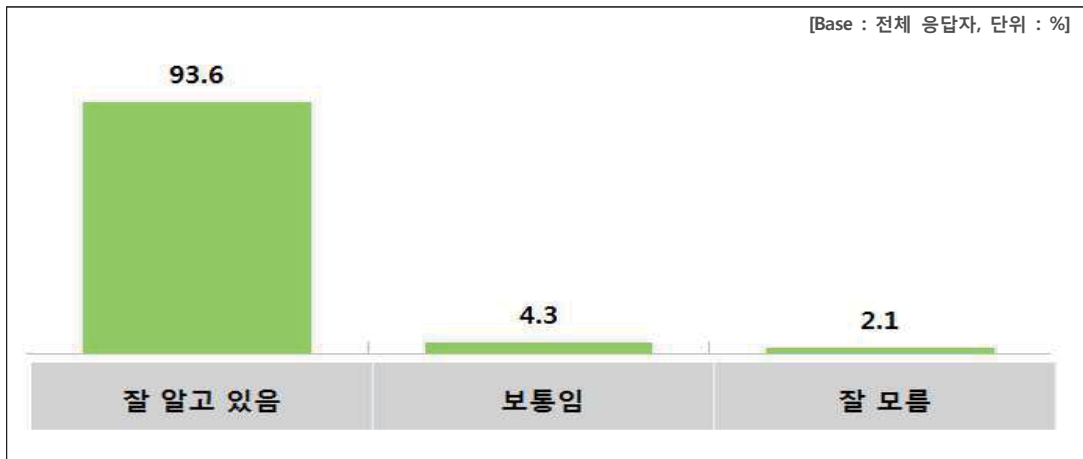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선사항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51.1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7.7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	17.0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 방안 수립	4.3
전통무예 구체적 대상 명시에 대한 생각	동의함	44.7
	보통임	12.8
	동의하지 않음	42.6
전통무예진흥법의 실효성 평가를 통한 재정비의 필요성	동의함	76.6
	보통임	12.8
	동의하지 않음	10.6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세부규정 정립에 대한 생각	동의함	70.2
	보통임	19.1
	동의하지 않음	10.6

(3) 조사결과분석

1)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인지정도

문 1 위에서 설명한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결과분석**
- 전체 응답자의 93.6%가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음 + 들어본 적 있음)고 응답함
 - 응답자의 10명중 9명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조사의 대상자가 전통무예 관련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임



Base=전체	사례수 (명)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72.3	21.3	4.3	2.1	93.6	2.1
성 별							
남 성	(46)	71.7	21.7	4.3	2.2	93.5	2.2
여 성	(1)	100.0	0.0	0.0	0.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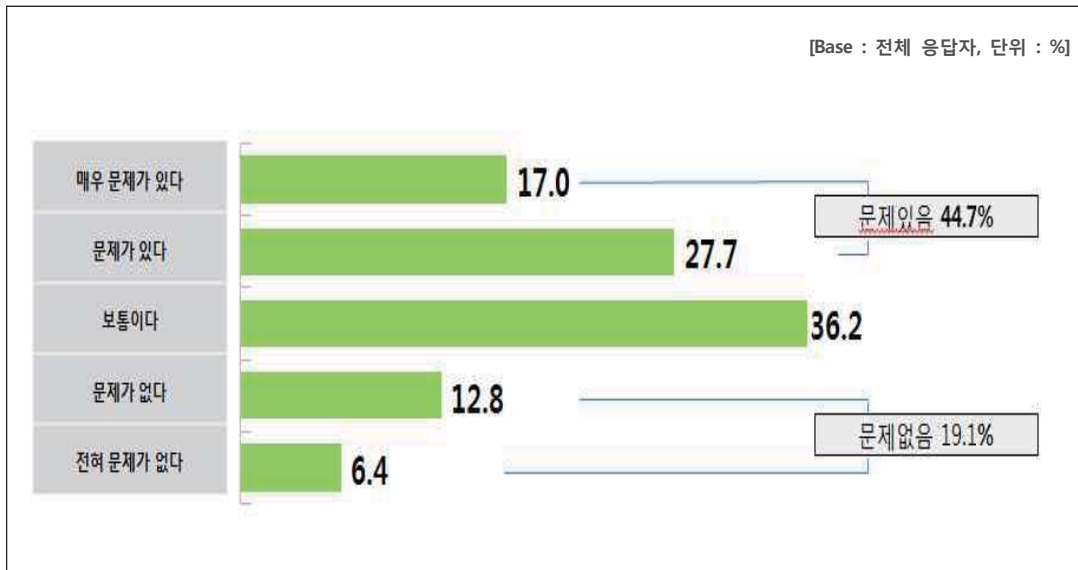
제 2 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Base=전체	사례수 (명)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보통 이다	잘 모른다	Top2	Bottom 2
연 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30대	(4)	50.0	50.0	0.0	0.0	100.0	0.0
40대	(15)	80.0	13.3	6.7	0.0	93.3	0.0
50세 이상	(27)	74.1	18.5	3.7	3.7	92.6	3.7

2)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점

문 2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법률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분석**
- 전체 응답자의 44.7%가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는 19.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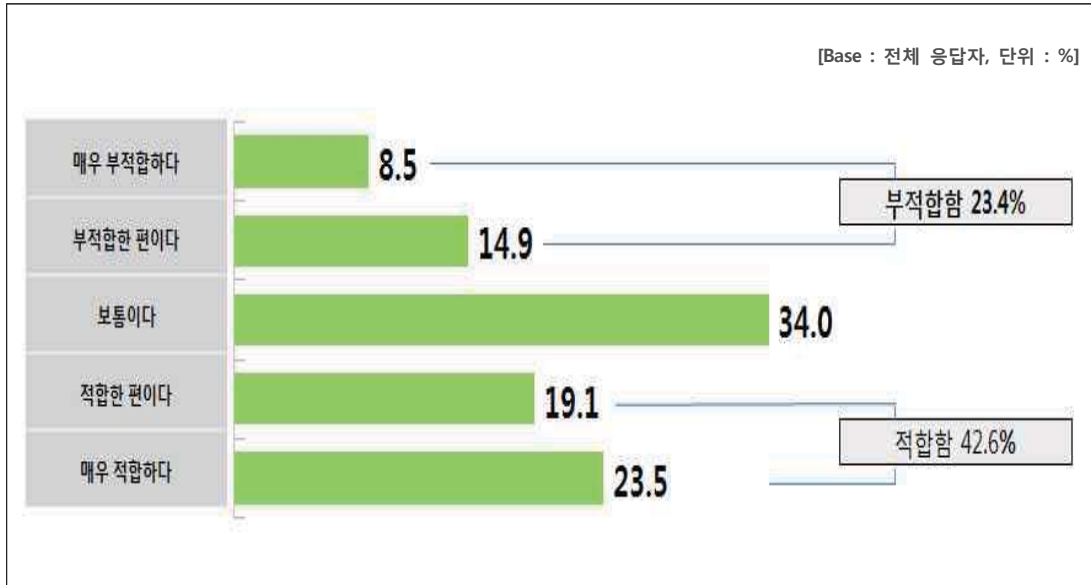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보통 이다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17.0	27.7	36.2	12.8	6.4	19.1	44.7
성 별								
남 성	(46)	17.4	28.3	37.0	10.9	6.5	17.4	45.7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대	(4)	25.0	25.0	25.0	25.0	0.0	25.0	50.0
40대	(15)	6.7	26.7	40.0	20.0	6.7	26.7	33.3
50세 이상	(27)	22.2	29.6	33.3	7.4	7.4	14.8	51.9
전통무예 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18.2	27.3	34.1	13.6	6.8	20.5	45.5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0.0	100.0

3)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의 목적 달성 적합도

문 3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를 지향에 기여”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귀하께서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얼마나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과분석**
- 전체응답자의 23.4%가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응답함
 - 적합하다는 응답은 42.6%였으며, 보통이라는 34.0%로 나타남

제 2 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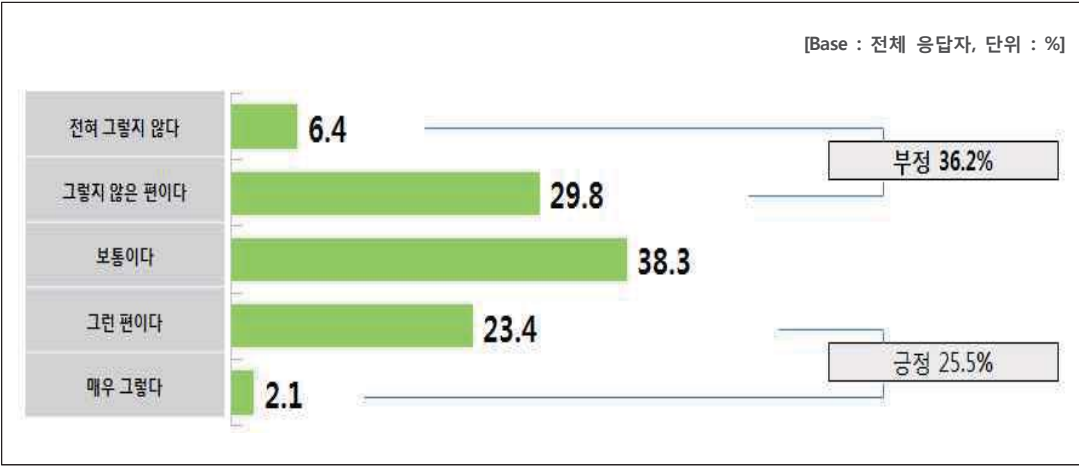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편이다	보통이다	적합한 편이다	매우 적합하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8.5	14.9	34.0	19.1	23.4	42.6	23.4
성 별								
남 성	(46)	8.7	15.2	34.8	19.6	21.7	41.3	23.9
여 성	(1)	0.0	0.0	0.0	0.0	100.0	100.0	0.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대	(4)	25.0	0.0	25.0	25.0	25.0	50.0	25.0
40대	(15)	0.0	13.3	26.7	40.0	20.0	60.0	13.3
50세 이상	(27)	11.1	18.5	37.0	7.4	25.9	33.3	29.6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9.1	15.9	34.1	15.9	25.0	40.9	25.0
보통임	(2)	0.0	0.0	50.0	50.0	0.0	50.0	0.0
잘 모름	(1)	0.0	0.0	0.0	100.0	0.0	100.0	0.0

이와 같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 및 개방형 질문지 응답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볼 때 일단 시행만 된다면 현재의 6개 조문으로도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응답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이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바, 기본계획 등 진흥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보다 더 큰 문제라는 수범자의 공동적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것이다. 질문 5-1에서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27.7%)”을 「전통무예진흥법」의 시급한 개선항목의 두 번째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1)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문 4 **현행 「전통무예 진흥법」에 대해 제시해 드리는 아래의 각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전통무예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문이 모두 포함되었다”

- 결과분석**
-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문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응답은 25.5%로 나타남
 - 포함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6.2%로 나타남
 -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도로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확인함



제 2 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6.4	29.8	38.3	23.4	2.1	25.5	36.2
성 별								
남 성	(46)	6.5	30.4	39.1	21.7	2.2	23.9	37.0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대	(4)	0.0	0.0	50.0	50.0	0.0	50.0	0.0
40대	(15)	6.7	20.0	46.7	26.7	0.0	26.7	26.7
50세 이상	(27)	7.4	40.7	29.6	18.5	3.7	22.2	48.1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6.8	29.5	36.4	25.0	2.3	27.3	36.4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0.0	100.0

4-2)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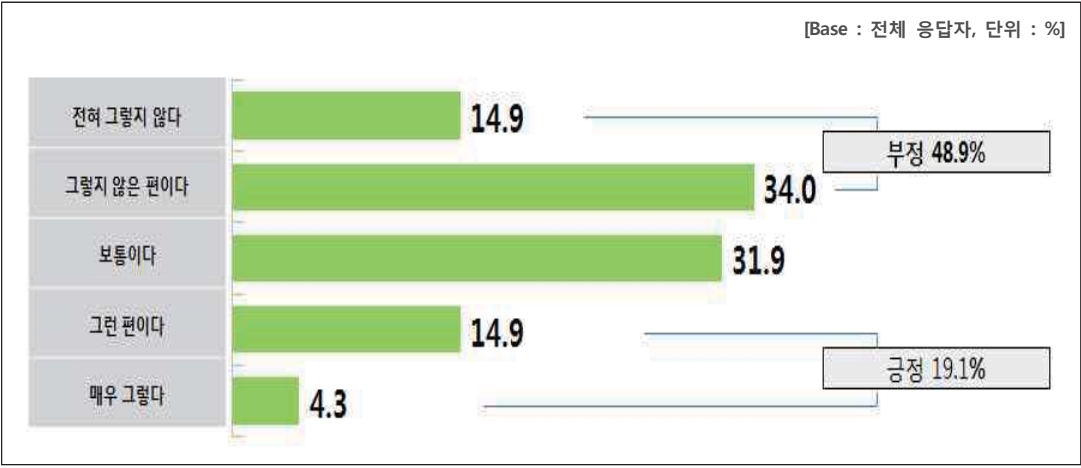
문 4

현행 「전통무예 진흥법」에 대해 제시해 드리는 아래의 각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전통무예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분석

-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이 “전통무예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9.1%로 나타남
-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8.9%로 나타남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14.9	34.0	31.9	14.9	4.3	19.1	48.9
성 별								
남 성	(46)	15.2	34.8	32.6	13.0	4.3	17.4	50.0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대	(4)	0.0	25.0	50.0	25.0	0.0	25.0	25.0
40대	(15)	20.0	20.0	33.3	13.3	13.3	26.7	40.0
50세 이상	(27)	14.8	44.4	25.9	14.8	0.0	14.8	59.3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15.9	34.1	29.5	15.9	4.5	20.5	50.0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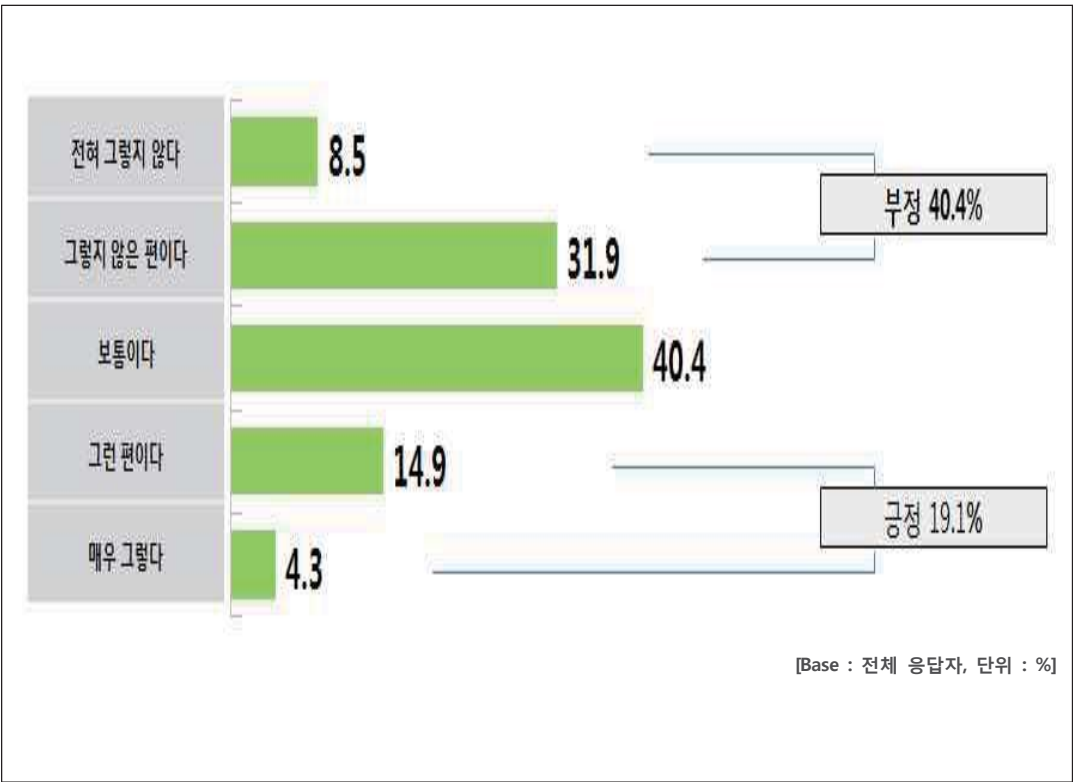
4-3)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문 4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 제시해 드리는 아래의 각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결과분석

-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응답이 19.1%로 나타난 반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40.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통이라는 응답은 40.4%로 나타남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8.5	31.9	40.4	14.9	4.3	19.1	40.4
성 별								
남 성	(46)	8.7	32.6	41.3	13.0	4.3	17.4	41.3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대	(4)	0.0	25.0	50.0	25.0	0.0	25.0	25.0
40대	(15)	20.0	20.0	33.3	20.0	6.7	26.7	40.0
50세 이상	(27)	3.7	40.7	40.7	11.1	3.7	14.8	44.4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9.1	31.8	38.6	15.9	4.5	20.5	40.9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0.0	100.0

4-4)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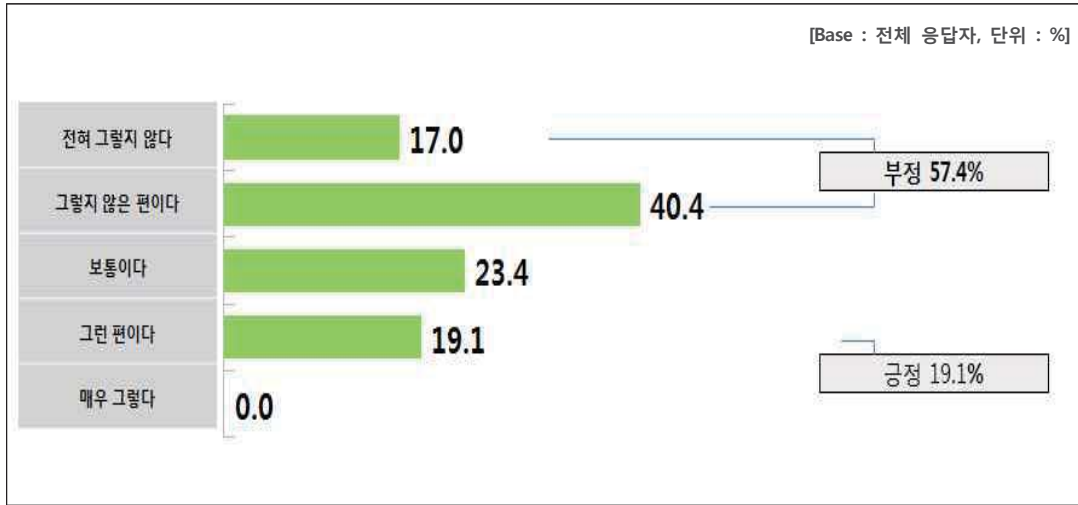
문 4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 제시해 드리는 아래의 각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결과분석

-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19.1%로 나타난 반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57.4%로 과반을 차지함

제 2 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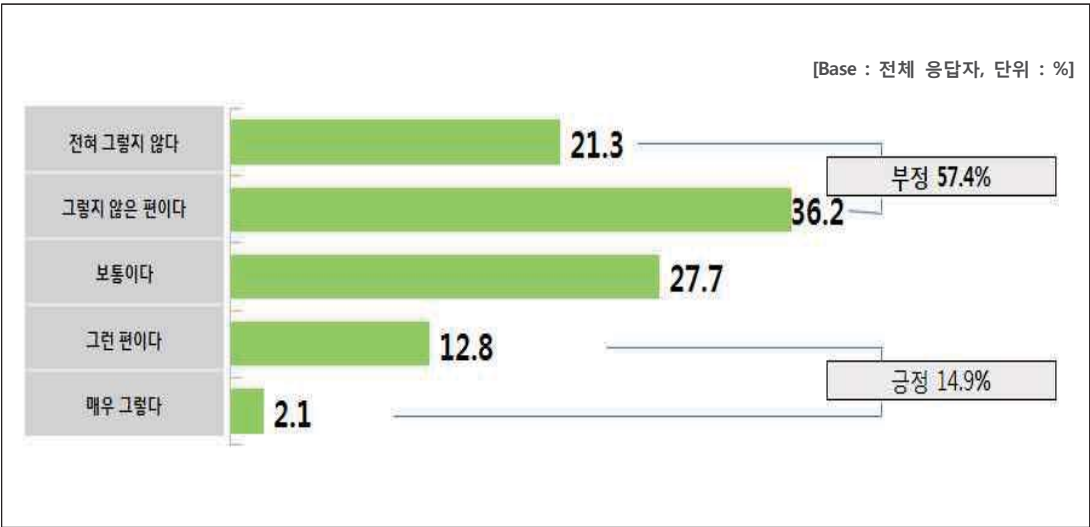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17.0	40.4	23.4	19.1	19.1	57.4
성 별							
남 성	(46)	17.4	41.3	23.9	17.4	17.4	58.7
여 성	(1)	0.0	0.0	0.0	100.0	100.0	0.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대	(4)	0.0	50.0	25.0	25.0	25.0	50.0
40대	(15)	33.3	26.7	26.7	13.3	13.3	60.0
50세 이상	(27)	11.1	48.1	18.5	22.2	22.2	59.3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18.2	40.9	20.5	20.5	20.5	59.1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100.0

4-5)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문 4 **현행 「전통무예 진흥법」에 대해 제시해 드리는 아래의 각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대한 세부시책이 마련되어 있다”

결과분석 ●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대한 세부시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14.9%에 그쳤으며, 반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5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21.3	36.2	27.7	12.8	2.1	14.9	57.4
성 별								
남 성	(46)	21.7	37.0	28.3	10.9	2.2	13.0	58.7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제 2 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Top2	Bottom 2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대	(4)	25.0	50.0	0.0	25.0	0.0	25.0	75.0
40대	(15)	20.0	33.3	33.3	13.3	0.0	13.3	53.3
50세 이상	(27)	22.2	37.0	25.9	11.1	3.7	14.8	59.3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22.7	36.4	25.0	13.6	2.3	15.9	59.1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0.0	100.0

5-1) 「전통무예진흥법」의 시급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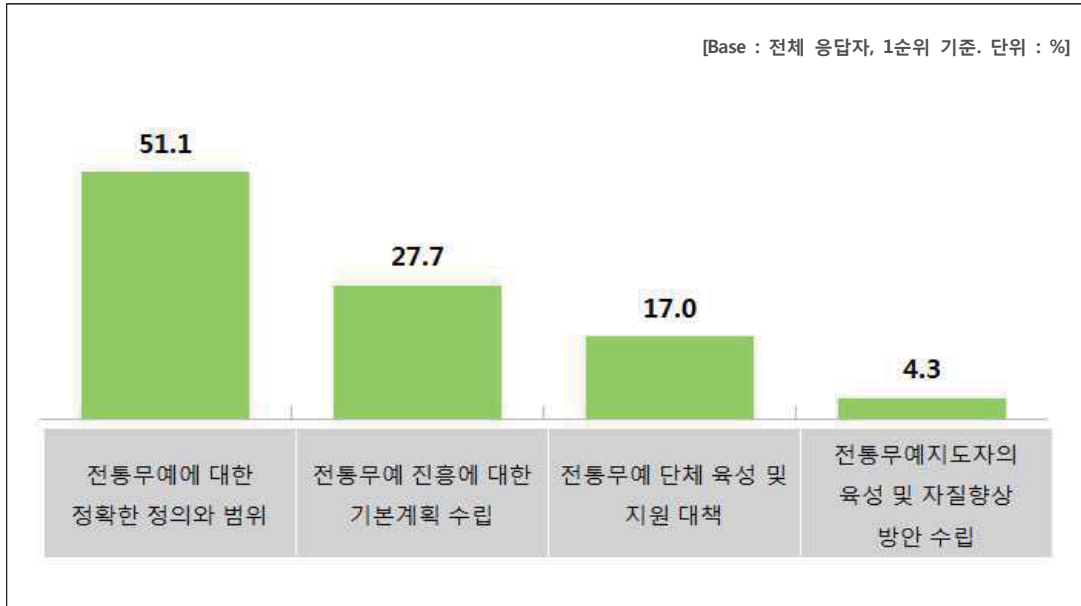
문 5-1

다음의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항목 중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분석

-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선사항으로,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마련되어야 한다”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27.7%)”이 뒤를 이음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통무예 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 방안 수립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전체 ▣	(47)	51.1	27.7	17.0	4.3
성 별					
남 성	(46)	52.2	26.1	17.4	4.3
여 성	(1)	0.0	100.0	0.0	0.0
연 령					
20대	(1)	0.0	100.0	0.0	0.0
30대	(4)	50.0	50.0	0.0	0.0
40대	(15)	53.3	26.7	13.3	6.7
50세 이상	(27)	51.9	22.2	22.2	3.7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50.0	27.3	18.2	4.5
보통임	(2)	50.0	50.0	0.0	0.0
잘 모름	(1)	100.0	0.0	0.0	0.0

5-2)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점

문 5-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점들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 전통무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 :

- 외래무예와 전통무예를 구분하는 개념 정의
- 「문화재보호법」과의 연계/차용은 맞지 않음

“전통무예라 하면, 선조부터 기술적으로 계승되어 오거나, 또는 사적자료에 의해 복원되어 전승활동이 다년간 진행되어온 무예나 종목 단체이어야 하는데, 이법을 입안할 때 외부에서 영입되어 정형화된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도입된 무예 즉 합기도, 공수도, 우슈, 검도 등은 전통무예가 아니다. 순수한 전통무예만 지정해야하며, 그런 단체종목을 시급히 지원하여 우수한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합기도를 한국전통무예로 보는 것 자체가 전통무예진흥법을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전통이라 하면 최소한 100년은 되어야 한다.”

“무예란 용어로 시대가 추구하는 무도와 무술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래 무술들의 전통무예 지정은 부적합하며, 무예 지도자들의 국가검정과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전통 무예의 정의에 있어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문항이 들어간 것은 명백한 오류다. 한국에서 자생된 무예에 대한 것으로 정의를 해야

한다. 전통무예의 발전 보급에 중심을 두고, 문화적인 가치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을 문화재보호법과 연결되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다. 전통무예는 스포츠라는 측면보다, 한국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전통무예 시행 의지 필요 :

-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 의지가 필요
- 전시행, 후보완

“전통무예진흥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것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시행의지에 문제가 있다. 어느 법률이나 다소간의 흠결은 있기 마련이나 그것을 빌미로 전통무예진흥법 자체를 지금에 와서 재논의하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조속히 실시하여 무예계 전반에 팽배한 불신과 패배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실질적인 법률적 기반 하에 지원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계획 의견수렴 후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 전통무예진흥법이 유아무야한 법으로 전락될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

“첫 취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잘 다듬어 시정 보완해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시행에 있어서 실시여부에 대한 강력한 조항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동법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세로 임하도록 법적인차원에서의 대책조항이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재 전통무예진흥법이 타당하기에 조속한 시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약간의 미비점은 시행 후 보완하면 좋겠다.”

“법제정7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까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및 시책이 매우 부족하다. 시행 후 보완하는 순서가 옳다고 본다. 몇 년 동안 제자리 책상 앞에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 종목 선정 기준 마련

“전통무예의 정의와 종목선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통성 및 수련인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빨리 종목을 지정 육성해야 하며, 외래무술 및 복원 무예에 대한 기준점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지원 계획의 구체화 및 계획 마련

“전통무예에 대한 인증(검증)의 구체적인 주체가 필요하며, 법안에 책무만 있고 구체적인 지원의 주체나 계획의 근거가 될 만한 세부법률이 없다.”

“전통무예단체들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소규모 단체까지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고 전통적 가치가 있는 무예를 발굴하고 진흥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득권 무예단체들의 입김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 그리고 무예라는 이름에 걸 맞는 무예 및 단체를 발굴하고 진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에 대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

“무예단체나 무예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나 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종목선정의 시기 등에 대한 안내 등도 필요하다.”

“처음 시행되는 법이기에 전통무예를 하는 단체에 도움 되었으면 한다.”

● 기 타

“무예의 특성상 반드시 그 종목의 적통자, 창시자, 재현자를 검증하여, 국가에서 인정해야 한다.”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여 협회나 단체를 위한 기본법이 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이 무예계의 진흥을 목적으로 입법되었는데, 문광부의 기본계획수립과정부터는 오히려 규제하는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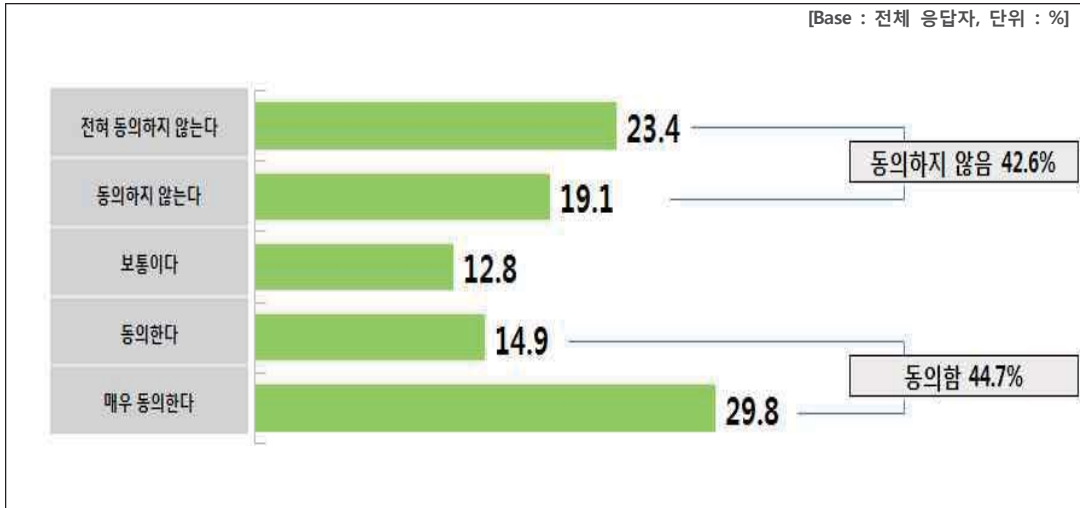
6) 전통무예 구체적 대상 명시에 대한 생각

문 6

“전통무예”의 정의규정에 택견, 마상무예, 십팔기 등과 같이 구체적 인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분석

● 전통무예의 정의규정에 “택견, 마상무예, 십팔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4.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42.6%로 두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남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23.4	19.1	12.8	14.9	29.8	44.7	42.6
성 별								
남 성	(46)	23.9	19.6	13.0	15.2	28.3	43.5	43.5
여 성	(1)	0.0	0.0	0.0	0.0	100.0	100.0	0.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대	(4)	25.0	50.0	0.0	0.0	25.0	25.0	75.0
40대	(15)	40.0	20.0	6.7	6.7	26.7	33.3	60.0
50세 이상	(27)	14.8	14.8	14.8	22.2	33.3	55.6	29.6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25.0	20.5	13.6	11.4	29.5	40.9	45.5
보통임	(2)	0.0	0.0	0.0	100.0	0.0	100.0	0.0
잘 모름	(1)	0.0	0.0	0.0	0.0	100.0	100.0	0.0

전통무예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수범자가 공감하고 있지만(문 5-1 참조), 정의규정을 예시적으로 개정하여 넣는 것에는 찬성과 반대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수범자가 정의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민감함을 보여준다.

정의 규정의 개정에는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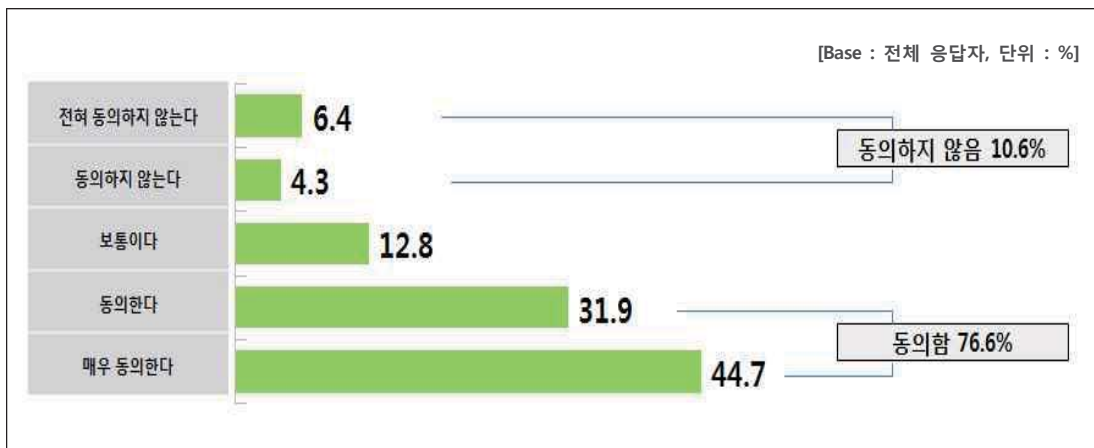
7) 전통무예진흥법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재정비의 필요성

문 7

현재의 「전통무예진흥법」이 효과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분석

- 현재의 “전통무예진흥법이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정비를 다시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응답자의 76.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 2 절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수용성 및 효과성 분석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6.4	4.3	12.8	31.9	44.7	76.6	10.6
성 별								
남 성	(46)	6.5	4.3	13.0	30.4	45.7	76.1	10.9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대	(4)	0.0	0.0	25.0	50.0	25.0	75.0	0.0
40대	(15)	6.7	0.0	6.7	20.0	66.7	86.7	6.7
50세 이상	(27)	7.4	7.4	11.1	37.0	37.0	74.1	14.8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6.8	4.5	9.1	34.1	45.5	79.5	11.4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잘 모름	(1)	0.0	0.0	0.0	0.0	100.0	100.0	0.0

8)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세부규정 정립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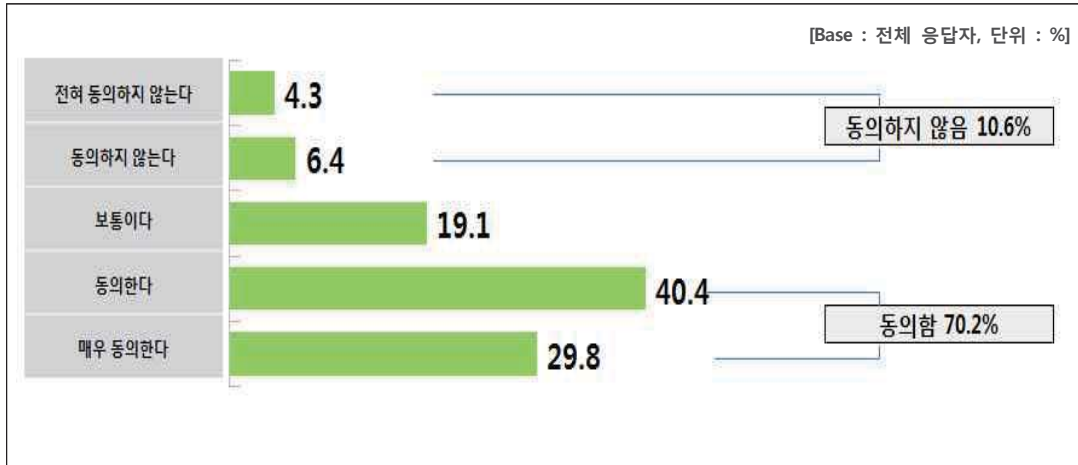
문 8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지원과 진흥을 위한 기준을 「전통무예진흥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분석

-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지원과 진흥을 위한 기준을 전통무예진흥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0.2%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 2 장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4.3	6.4	19.1	40.4	29.8	70.2	10.6
성 별								
남 성	(46)	4.3	6.5	19.6	39.1	30.4	69.6	10.9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대	(4)	0.0	25.0	0.0	75.0	0.0	75.0	25.0
40대	(15)	6.7	6.7	6.7	33.3	46.7	80.0	13.3
50세 이상	(27)	3.7	3.7	25.9	40.7	25.9	66.7	7.4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4.5	6.8	18.2	40.9	29.5	70.5	11.4
보통임	(2)	0.0	0.0	50.0	50.0	0.0	50.0	0.0
잘 모름	(1)	0.0	0.0	0.0	0.0	100.0	100.0	0.0

9) 전통무예진흥법에 추가되어야 할 규정

문 9 전통무예의 진흥 및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에 추가되어야 할 규정이나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종목지정 관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종목지정으로 해야 하며, 외래무술의 지정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

“종목자격기준방안검토가 필요하다. 전통성, 대중성, 가치성에 대한 개별 종목의 명확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한다. 명상계 무술과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개인 복원의 무예들은 철저히 걸러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통무예종목지정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18기중 타국 무술은 제외하고 순수 한국무술을 골라서 해야 한다.”

“종목을 지정하는데 있어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하지 말고 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 단체, 지원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각 종목별로 적통자, 창시자, 재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도자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선발된 지도자들은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전통무예는 각 단체의 뚜렷한 단체 이력과 전통에 대하여 증빙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규격에 의해 맞추어 만들어진 조직보

다 과거부터 자생력을 갖고 활동하는 진짜 단체를 찾아 규모가 작아도 법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는 다 포함되어야 되며, 법인체만 인가 받고 소속 체육관이 전국에 100개 정도의 단체면 받아 주어야 한다.”

“전통 무예 단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통 무예를 전수받고 개발하는 전문 지원에 대한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전통 뿐만 아니라 국내에 보급되어 활동 중인 유입된 무예를 포함하여야 하고, 구체화에 의한 실제 지원이 필요하다.”

● 투명/공정성 확보 필요

“취지 목적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법률에 정해진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를 지정해야 한다. 단체 선정시 선정위원회의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

“전통무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이를 객관적으로 논의할 기구를 두고, 학자들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함께 관여를 해야 한다.”

“학문으로 배운 심사위원과 실기를 다루는 심사위원이같이 심사를 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기타 의견

“시행의지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 전통무예법 자체에는 부족함이 있다 보기 어렵다. 법 제정 후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것은 법 보다는 그 법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의 의지부족이다.”

“법정 법인을 설립하여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하며, 무예단체를 관리하는 “무예청”을 건립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한전통무예진흥회”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

“추가되어야 할 규정보다는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문화와 문화재 그리고 전통의 계승발전 및 가치를 재창출하고 확장시키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현재의 전통무예진흥법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잊혀져가거나 명맥만 유지한 채 실전되어가는 무예들에 대한 발굴대책이 없다.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10) 전통무예진흥방안에 대한 의견

문 10

전통무예의 진흥 및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에 추가되어야 할 규정이나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에 추가되어야 할 규정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물은 바, 주로 종목선정 관련 사항, 구체적인 지원계획 마련, 조속한 시행 및 공정성 확보로 대표되는 의견을 얻었다.

● 종목선정 관련

“하루빨리 종목 지정을 해야 하며,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종목 지정에 있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전통무예가 확실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종목지정을 하루 빨리 지정해야한다. 지정시 복수단체는 제외시켜야 하며, 창시무술은 발생연도가 30년 이상 이어야한다. 또한, 복원무예는 협회장이 확실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학술적 의미로서 발간한 논문(2편) 및 책자(2권)가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건너온 무예가 전통으로 탈바꿈해서는 안된다. 순수한 우리민족의 혈통을 받은 무예를 선정하여 육성해야 비로소 한국적인 전통무예가 되는 것이다.”

“18기 또는 24반 무예는 무예도 보통지에 나와 있는 무술 종류다. 기효신서, 무비지에 나오는 중국무술과 일본무술은 빼야한다. 더불어, 무예제보, 무예제보속편도 참고해야한다.”

● 구체적인 지원계획 마련

“실제 수련장이 없어도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종목지정을 받을 경우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바라고 종목지정에 목을 매달고 있다. 만약 창시자가 있다면 실제 수련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그에 따른 교육연수원, 그리고 전통무예 지도자에 알맞은 특화된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보다는 한국에서 자생한 무예에 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난립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연구 및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소수의 단체라도 전통무예의 필요성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게 법규정이 정해져야 한다.”

“그 동안 전통무예발전을 위해 노력한 원로들에 대한 명예와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전통무예를 배우는 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택견이나 몇 개 종목을 위주로 진흥정책을 하기 보다는 무술단체들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적 보급의 차원에서 단체 지원이 아닌 한국 자생의 무예에 대한 보급과 육성을 사회체육, 문화활동 등과 같은 국민 복지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맹운영, 지도자육성, 대회개최 및 참가, 국제교류 등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전 무도인이 통합해서 갈 수 있게 같은 부류의 운동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소수의 무도인이 불이익을 안 받는 진정한 진흥법이 되어야 한다.”

“전통무예종목 및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무예를 문화 및 스포츠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를 최대한 많이 발굴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조속한 시행 필요

“기본계획발표가 우선이다. 그 뒤에 기본계획에 따라 조금씩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된다. 언제까지 방안이니 연구조사를 하고 있어야 하나.”

“조금은 미비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전통무예진흥법을 하루빨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종목 육성 및 종목지정을 시행해서 태권도를 제외한 국내외 활성화된 무예를 발전시켜 국가브랜드를 높였으면 좋겠다.”

“빨리 출발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 공정성 확보가 필요

“지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단지 관련자 몇몇만을 위한 법정인지 기득권을 가진 야합 집단 그리고 특정 단체의 장들이 각자의 이익에 눈먼 행동으로 그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고 나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무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 육성해야 하는 단체 및 종목은 행사 등의 지원금 등으로 생활체육회에서 활동하는 형태로 우선 시행, 보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방안이 제시되어도 결과적으로 해당 단체의 배제시 예상되는 파장이 크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종목선정과 실질적인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혜택일 것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과 진행은 환영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 무예단체들이 실망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 기타 의견

“순수전통무예는 국내에 몇 가지가 되는데, 택견보다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국궁, 본국검 등은 무형문화재로 시급히 등재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한다.”

“국가에서 정기적인 전통무예 대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급조된, 규격에 맞춰진 단체를 조심해야 한다.”

“학계와 무도계가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지금은 학계쪽으로 일방적이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전통무예를 알리고, 심신수양이나 건강, 힐링 등에 도움이 되는 무예가 자생적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종목선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제 3 절 비교법적 분석

1. 중 국

중국의 전통무예는 ‘우슈(武術)’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장권(북권), 남권, 태극권, 산타 등으로 나누어서 경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소림권, 팔괘장, 형의권, 의권, 홍가권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무술이 존재하고 있다.²⁶⁾

중국의 소림무술은 영화나 소설을 통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제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26) 전통무예진흥 정책 환경 분석, <http://blog.daum.net/kispa/18210207> (2014년 10월 27일 검색).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단계이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표로 참석한 과거 무림의 태산북두인 소림사 방장 융신(永信)법사는 소림사의 상주원(常駐院), 탑림(塔林), 초조암(初祖庵) 등 3개 건축물과 함께 소림 무술(쿵푸)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도록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쿵푸(功夫)는 일반무술과 달리 수행과 참선을 통해 품행을 닦고 자기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에 세계무형문화재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²⁷⁾

흑룡강성 민족사무위원회는 4년에 한 번씩 소수민족 전통체육대회를 조직하고 있는 바, 이 대회는 1953년 제1회 대회를 천진(天津)에서 시작되어 1982년부터 공식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조선족 종목으로는 씨름과 그네가 정식종목이며, 시범종목으로 널뛰기와 예술체조가 시행된다. 활쏘기의 경우, 쇠뇌, 사노(射弩)가 정식종목에 포함되었다.²⁸⁾

2. 일 본

무덕회를 중심으로 아이키도, 대동류 합기유술, 현대유도, 고류유술, 현재검도, 고류검술, 가라데, 궁도, 나기나타술, 총검도 등의 종목이 있으며, 일본의 무도 종목 중 국제화 된 것은 유도(1952), 검도(1970), 가라데(1970), 합기도(1976), 상박(1992), 소림사권법(1974), 궁도와 치도(1990) 등이 있으며, 현재 일본 내에서 무예유파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으나,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시연비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제적 수입은 무술과 다른 업종에서 수입을 얻고 있거나, 강습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문부과학성에서는 중학교 무도교육필수화를 지시, 이에 공립중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무도관 건축비용의 1/2를 지원하고 있다. 사립에도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²⁹⁾

27) 한국스포츠개발원, 앞의 책, 2009, 208~210면.

28)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013, 21면.

29)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013, 22면.

일본은 일제말기부터 일본의 무도종목을 학교체육의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일본국민들의 신체문화 속에 체득시켜 왔다. 그들은 모든 무도단체를 하나의 통일된 조직 속에 포함시켜 동경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직전인 1963년에 일본천황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성금 200억원을 모아 엄청난 규모의 일본무도관을 설립하였으며, 일본의 무도 관련 협력조직체는 각각의 재단법인으로서 유도, 검도, 궁도, 스모, 공수도, 합기도, 소림사권법, 나기나타, 총검도연맹 등과 일본무도협의회, 현립(縣立) 무도관협의회, 무도학회, 고무도협회, 학생무도구락부, 국제무도대학 등이 나뉘어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³⁰⁾

3. 미 국

세계최대의 다민족국가인 만큼 다양한 민족의 무술이 모여 있으며, 이를 수용하여 아메리카 권법, 아메리칸 킥복싱 등의 종목으로 발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술, American-Samoan의 Limalama, 하와이의 Kapu Kulalua 등의 종목이 있다. 국가차원의 정책은 없으나 미 전 지역의 주별로 특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시청에서 시설 감독을 하거나, 도장은 주 단위로 법인 등록을 하고, 주별로 회비에 대한 세금을 8.7% 내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2~3회 정도 도장에 가면 학교 과정 수료를 인정. 무예 단체는 사전에 주 정부에 이와 관련된 신청 및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무술대회가 민간자본에 의해 진행, 발전 중에 있다.³¹⁾

4. 기 타

태국의 무예 타이는 1,000년가량을 이어지며 타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태국의 격투 무예이다. 타이 복 싱이라고도 불리며 팔꿈치와 무

30)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010, 22면.

31)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013, 23면

릎, 정강이 등의 파괴력 있는 부위를 주로 사용한다. 그 유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타이의 오래된 군사무술 도서인 유타사트(Yuttasart)라는 책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무에 타이는 전신을 타격도구로 사용하며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무릎, 팔굽 등 인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되는 부분은 오로지 머리뿐이다. 타이에서는 머리를 건드리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바닥에 쓰러진 선수를 때리거나 침을 뱉어선 안 된다는 정도의 규칙 이외엔 별다른 규칙이 없을 정도로 격렬하다. 무에 타이 경기에서는 주로 무릎과 팔굽을 사용하는 기술이 많은데, 특히 목잡기 기술은 무에 타이 만의 독특한 기술로, 목을 잡고 상대의 힘을 이용하여 공격과 방어를, 그리고 팔굽과 무릎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목잡기 기술은 무에 타이 기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³²⁾

그 밖에 인도네시아의 전통무예 실라트나 스페인, 프랑스령의 바스크 사람들이 펼치는 바스크민족 전통놀이 속의 무예대회는 각각 여름에 수개월간에 걸쳐 실시되는데 인터넷이나 팜플렛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이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공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 되어 전통무예로 민족성을 재생산하고 있다.³³⁾

또한 UNESCO는 유엔(United Nation) 산하에 속한 여러 기관들 중 문화, 체육과 스포츠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스포츠 행사를 통하여 함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각 사회의 문화적 근본의 자부심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형성하기 위해 전통스포츠와 경기(TSG)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UNESCO는 전통스포츠와 경기를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로 보고, 전통스포츠와 경기가 우리 사회

32)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지도자 연수교재, 2012, 253~254면.

33)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전통무예진흥법안 검토보고서, 2005, 4면.

의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하며, 문화적인식의 가치 연대 및 다양성과 포용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UNESCO에서는 1999년 12월 제3회 체육교육과 스포츠 관계 장관국제회의(MINEPS III)를 통하여 Punta del Este선언을 적용하여 다른 지역 및 국가의 전통 및 토착 스포츠 정신의 보전을 강조했고, 전통스포츠와 경기를 세계문화유산의 목록으로 포함한 바 있다.³⁴⁾

5. 시사점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의 진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요 국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하여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대안 마련에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비교대상 국가에서 입법적 근거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입법대안에서 정책실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의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교재개발 및 보급, 2013, 27면.

제 3 장 입법대안의 검토 및 연구의 한계

제 1 절 대안 A :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I.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의 방향성

수범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하여 전통무예에 대한 실질적인 진흥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대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된 관련 전문가 인터뷰와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 「전통무예진흥법」은 제정당시의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전체 응답자의 44.7%가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수범자 실태조사 문2 참조), 현재의 “전통무예진흥법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정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응답자의 76.6%가 동의(문7 참조)한다는 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문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하는 질문(문4 참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6.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문가 인터뷰와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입법대안 마련시 참고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종목지정 관련 사항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목지정
 - 명확한 기준에 따른 종목지정
 - 투명한 종목 선정과정 보장

- 단체 지원 관련 사항
 - 지원대상 단체 선정시 투명성 확보
 - 법정단체 설립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한 무예단체 지원 및 육성
- 세부지원방안 마련
 - 연맹운영, 지도자육성, 대회개최 및 참가, 국제교류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규정 마련
- 전통무예지도자 교육 및 지원 관련 사항
 - 일선에 지도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시스템 마련 필요
- 교육, 홍보 관련
 -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무예에 대한 발굴, 보전에 관한 규정 마련
- 이중지원 금지
 - 타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마련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분야별 대표 진흥법의 체계에 대한 분석 결과, 통상 진흥법은 목적규정, 정의 규정, 국가 등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등 진흥관련 계획 수립 규정, 직접적인 지원·진흥방안 관련 규정,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관련 규정, 관련 단체에 관한 규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와 입법체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살펴보면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전통무예의 정의 규정 명확화

“무엇이 전통무예인가”하는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된다. 이를 통하여 진흥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현재의 정의규정이 무엇이 전통무예인지 확인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법률의 목적인 진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이다. 현행 「전

통무예진흥법」 제2조에 따라 명확하게 전통무예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택견” 뿐이다. 전통무예 단체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도출할 수 있는 무예 분야를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무예 분야를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으로 입법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내지 인지 정도를 반영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균적 일반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관련 사항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목 지정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가 인터뷰와 수범자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무예의 단체는 약 340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한올림픽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와 같은 제도권 내 무예단체는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궁수도, 궁도 등이 존재하나 경기 중심이 아닌 수련을 강조하는 무예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종목을 법상 육성종목으로 지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논란을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와 실체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종목지정 및 투명한 종목 선정과정이 법상 보장되어야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3) 세부지원방안 관련 사항

연맹운영, 지도자육성, 대회개최 및 참가, 국제교류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세부적인 지원방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2008년 법 제정이후 현

재까지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이외에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통무예진흥의 근본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제 정비 및 행정전달체계 구축, 무예도장운영의 합리화, 무예인증제 도입³⁵⁾ 등 무예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무예에 대한 발굴 및 보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문화적 측면에서의 전통무예에 대한 진흥 및 지원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이중지원 금지

「문화재보호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타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마련하여 이중지원을 방지하고 국고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전통무예지도자 관련 사항

법령에서 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하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도자양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국가지도자의 자격제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일 것이다.

II.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대안

수범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방향에 적합하게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5) 김대회, 문화재보호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의 무예진흥에 관한 법제도적 소고,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2호, 2011년, 112면.

먼저 정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통무예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의 제4조에 위치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제3조로 위치를 변경하였다. 통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정의 규정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면서, 계획 수립 시 전통무예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립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전통무예종목에 대한 인증규정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상 규정인 전통무예단체 육성 및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에 관한 규정은 위치만 변경하여 배치하였다.

새롭게 규정을 마련한 사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 등을 포함하는 전통무예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위임위탁 근거 규정,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하여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무예의 진흥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더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전통무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6 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전통무예종목의 인증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따른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 9 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제교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무예 관련 산업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전통무예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3. 전통무예 관련 국제 대회 등의 개최·참가
4. 전통무예 관련 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문화재보호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의 범위 내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전담기관 등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밑줄친 부분은 법률에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임

제 2 절 대안 B : 「국민체육진흥법」으로의 흡수 방안

「전통무예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의 한 부분으로 흡수하여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흡수 통합 방안을 통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지원 및 진흥 규정에 따라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 및 진흥을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으로의 흡수 방안은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당시의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정당시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내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 소관 체육 관련 법률 중에서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전통무예의 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전통무예가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체육적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전통무예의 원형 보존에 가치를 둘 경우 「문화재보호법」으로 흡수가 가능하며,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진흥이라는 체육적 가치에 무게를 둘 경우에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의 틀에서 흡수가 가능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다른 법률의 일부로 흡수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해당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기관에서의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흡수·편입하는 입법대안을 검토하는 경우 「전통무예진흥법」과 동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씨름 진흥법」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아니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흡수·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의 규정에 전통무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통무예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p>「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2. “<u>전통무예</u>”란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2. 이하 생략 <p>제10조의2(전통무예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무예종목 및 단체의 지정 등 전통무예의 진흥을 통한 국민의 체력 증진과 전통무예 진흥 관련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

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흡수하여 규정하는 입법대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체육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규정에서 제

3항은 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규정에서 “전통무예지도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금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기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위임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에 전통무예 관련 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통무예에 한정하는 별도의 법정 단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상 현행 법정 단체의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대안 비교 및 한계

I.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전통무예에 특화된 지원과 진흥이 가능하도록 하며, 법률의 입법목적의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에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몇 차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예단체의 난립 등 현안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이 무산되었던 실정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 제정이후 4차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무예단체의 단결력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진흥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현재와 같이 입법의 효과가 미흡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예에 특화된 지원과 진흥이 가능 · 민간도장 등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예단체가 난립하고 있어 전통무예 종목지정에 어려움 · 관련 법령간의 통일성 부족 · 대중화 관련 추진 주체의 부재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 세계무술연맹의 유네스코 자문기구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적 성과 및 전문인력 부재 · 기 지원 받는 종목에 치우친 지원

Ⅱ.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

전통무예도 체육의 한 분야로 보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전통무예진흥법」이 있으나 입법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현재의 실정을 즉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강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스포츠와 무예를 구분하고 있는 현 체제상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약점이 있다.

법률 통합 과정에서 관련 입법의 체계적 정비가 가능하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면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특별한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위협요소를 지니고 있다.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현실에 적합한 지원, 진흥 방안 마련 가능	· 스포츠와 무예를 구분하는 현 체제상 관련 단체의 반발 예상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법률 통합시 체계적 정비가 가능함	· 법령체계성 정비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특별한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취지 몰각

Ⅲ. 연구의 한계

「전통무예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흡수·편입하는 입법대안을 검토하는 경우 「전통무예진흥법」과 동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씨름 진흥법」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적 한계 및 실태조사 관련 비용의 한계, 그리고 연구목적이 「전통무예진흥법」에 한정되어 있어서 「씨름 진흥법」 관련 현황, 입법목적 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전통무예진흥법」의 「국민체육진흥법」에의 흡수·편입에 관한 입법대안의 검토가 입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논의를 포함해서 폭넓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문 · 단행본 · 보고서]

- 김대희, 문화재보호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의 무예진흥에 관한 법제도적 소고,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2호, 2011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지도자양성 기본 지침 개발, 2011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지도자 연수교재, 2012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 2010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지도자양성 종목선정 기준틀 구성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2012
- 전통무예진흥법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5, 국회문화관광위원회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2009.9.1) 검토보고서, 2011,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2010.3.8) 검토보고서, 2011,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전통무예진흥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8
- 체육과학연구원,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연구, 2009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국민생활체육회, <http://www.sportal.or.kr/index.do>

참 고 문 헌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www.kspo.or.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무카스, <http://www.mookas.com/>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main.jsp>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장) 블로그/성문정의 스포츠 이야기, <http://blog.daum.net/kispa/18210207>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com/>

한국스포츠개발원, <http://www.sports.re.kr>

부

부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관련 조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한국리서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법평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입법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더 좋은 입법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주관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자: 차현숙 박사

수행기관 :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김기주 이사

배문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배문2. 귀하의 연령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아래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설문 전 아래 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전통무예진흥법」의 주요내용
[법률 제9006호, 2008.3.28., 제정/2009.3.29. 시행]

가. 목 적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

나. 정 의

-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함
-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함

다. 기본계획의 수립

- 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 그밖에 필요한 사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마. 전통무예 단체의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함

바. 전통무예지도사의 육성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전통무예진흥법」의 에 대한 인식/인지 및 문제점

문1. 위에서 설명한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잘 알고 있다
2. 들어본 적은 있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문2.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는 분은 법률안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매우 문제가 있다
2. 문제가 있다
3. 보통이다
4. 문제가 없다
5. 전혀 문제가 없다

문3.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를 지향에 기여”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귀하께서는 전통무예 진흥법이 얼마나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적합하다
2. 부적합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합한 편이다
5. 매우 적합하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통무예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문이 모두 포함되었다					
2. 전통무예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3.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4.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5.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대한 세부시책이 마련되어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정비 방안

※ 아래 보기에 제시해 드린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문4. 현행 「전통무예 진흥법」에 대해 제시해 드리는 아래의 각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문5-1. 다음의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항목 중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2.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3.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
4.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 방안 수립

문5-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점들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

※ 다음은 「전통무예진흥법」의 정비 방안입니다. 각 정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6. “전통무예”의 정의규정에 택견, 마상무예, 십팔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7. 현재의 「전통무예진흥법」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8.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지원과 진흥을 위한 기준을 「전통무예진흥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문9. 전통무예의 진흥 및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에 추가되어야 할 규정이나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1) 전통무예 진흥법에 추가되어야 할 규정 ()
- 2) 전통무예 진흥 방안에 대한 의견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수범자 실태조사 결과표

[응답자 분포표]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 체
▣ 전체 ▣	(47)	100.0
성 별		
남 성	(46)	97.9
여 성	(1)	2.1
연 령		
20대	(1)	2.1
30대	(4)	8.5
40대	(15)	31.9
50세 이상	(27)	57.4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93.6
보통임	(2)	4.3
잘 모름	(1)	2.1

[표 1] 성별 [배문1]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남 자	여 자
▣ 전체 ▣	(47)	97.9	2.1
성 별			
남 성	(46)	100.0	0.0
여 성	(1)	0.0	100.0
연 령			
20대	(1)	100.0	0.0
30대	(4)	75.0	25.0
40대	(15)	100.0	0.0
50세 이상	(27)	100.0	0.0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97.7	2.3
보통임	(2)	100.0	0.0
잘 모름	(1)	100.0	0.0

[표 2] 연령 [배문2]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 전체 ▣	(47)	2.1	8.5	31.9	57.4
성 별					
남 성	(46)	2.2	6.5	32.6	58.7
여 성	(1)	0.0	100.0	0.0	0.0
연 령					
20대	(1)	100.0	0.0	0.0	0.0
30대	(4)	0.0	100.0	0.0	0.0
40대	(15)	0.0	0.0	100.0	0.0
50세 이상	(27)	0.0	0.0	0.0	100.0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2.3	9.1	31.8	56.8
보통임	(2)	0.0	0.0	50.0	50.0
잘 모름	(1)	0.0	0.0	0.0	100.0

[표 3]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문1]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보통 이다	잘 모른다	Top2	Bottom 2
▣ 전체 ▣	(47)	72.3	21.3	4.3	2.1	93.6	2.1
성 별							
남 성	(46)	71.7	21.7	4.3	2.2	93.5	2.2
여 성	(1)	100.0	0.0	0.0	0.0	100.0	0.0
연 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30대	(4)	50.0	50.0	0.0	0.0	100.0	0.0
40대	(15)	80.0	13.3	6.7	0.0	93.3	0.0
50세 이상	(27)	74.1	18.5	3.7	3.7	92.6	3.7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77.3	22.7	0.0	0.0	100.0	0.0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잘 모름	(1)	0.0	0.0	0.0	100.0	0.0	100.0

[표 4] 현 전통무예진흥법의 문제점 [문2]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보통 이다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Top2	Bottom 2	평균
▣ 전체 ▣	(47)	17.0	27.7	36.2	12.8	6.4	19.1	44.7	2.6
성 별									
남 성	(46)	17.4	28.3	37.0	10.9	6.5	17.4	45.7	2.6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4.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
30대	(4)	25.0	25.0	25.0	25.0	0.0	25.0	50.0	2.5
40대	(15)	6.7	26.7	40.0	20.0	6.7	26.7	33.3	2.9
50세 이상	(27)	22.2	29.6	33.3	7.4	7.4	14.8	51.9	2.5
전통무예 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18.2	27.3	34.1	13.6	6.8	20.5	45.5	2.6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3.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5] 현 전통무예진흥법의 목적 달성 적합도 [문3]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부적합 하다	부적합한 편이다	보통 이다	적합한 편이다	매우 적합 하다	Top2	Bottom 2	평균
▣ 전체 ▣	(47)	8.5	14.9	34.0	19.1	23.4	42.6	23.4	3.3
성 별									
남 성	(46)	8.7	15.2	34.8	19.6	21.7	41.3	23.9	3.3
여 성	(1)	0.0	0.0	0.0	0.0	100.0	100.0	0.0	5.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
30대	(4)	25.0	0.0	25.0	25.0	25.0	50.0	25.0	3.3
40대	(15)	0.0	13.3	26.7	40.0	20.0	60.0	13.3	3.7
50세 이상	(27)	11.1	18.5	37.0	7.4	25.9	33.3	29.6	3.2
전통무예 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9.1	15.9	34.1	15.9	25.0	40.9	25.0	3.3
보통임	(2)	0.0	0.0	50.0	50.0	0.0	50.0	0.0	3.5
잘 모름	(1)	0.0	0.0	0.0	100.0	0.0	100.0	0.0	4.0

[표 6]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_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문 포함 [문4]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Top2	Bottom 2	평균
▣ 전체 ▣	(47)	6.4	29.8	38.3	23.4	2.1	25.5	36.2	2.9
성 별									
남 성	(46)	6.5	30.4	39.1	21.7	2.2	23.9	37.0	2.8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4.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
30대	(4)	0.0	0.0	50.0	50.0	0.0	50.0	0.0	3.5
40대	(15)	6.7	20.0	46.7	26.7	0.0	26.7	26.7	2.9
50세 이상	(27)	7.4	40.7	29.6	18.5	3.7	22.2	48.1	2.7
전통무예 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6.8	29.5	36.4	25.0	2.3	27.3	36.4	2.9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3.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7]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_ 전통무예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문4]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Top2	Bottom 2	평균
▣ 전체 ▣	(47)	14.9	34.0	31.9	14.9	4.3	19.1	48.9	2.6
성 별									
남 성	(46)	15.2	34.8	32.6	13.0	4.3	17.4	50.0	2.6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4.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
30대	(4)	0.0	25.0	50.0	25.0	0.0	25.0	25.0	3.0
40대	(15)	20.0	20.0	33.3	13.3	13.3	26.7	40.0	2.8
50세 이상	(27)	14.8	44.4	25.9	14.8	0.0	14.8	59.3	2.4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15.9	34.1	29.5	15.9	4.5	20.5	50.0	2.6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3.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8]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_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문4]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Top2	Bottom 2	평균
▣ 전체 ▣	(47)	8.5	31.9	40.4	14.9	4.3	19.1	40.4	2.7
성 별									
남 성	(46)	8.7	32.6	41.3	13.0	4.3	17.4	41.3	2.7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4.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
30대	(4)	0.0	25.0	50.0	25.0	0.0	25.0	25.0	3.0
40대	(15)	20.0	20.0	33.3	20.0	6.7	26.7	40.0	2.7
50세 이상	(27)	3.7	40.7	40.7	11.1	3.7	14.8	44.4	2.7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9.1	31.8	38.6	15.9	4.5	20.5	40.9	2.8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3.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9]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_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 [문4]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Top2	Bottom 2	평균
▣ 전체 ▣	(47)	17.0	40.4	23.4	19.1	19.1	57.4	2.4
성 별								
남 성	(46)	17.4	41.3	23.9	17.4	17.4	58.7	2.4
여 성	(1)	0.0	0.0	0.0	100.0	100.0	0.0	4.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
30대	(4)	0.0	50.0	25.0	25.0	25.0	50.0	2.8
40대	(15)	33.3	26.7	26.7	13.3	13.3	60.0	2.2
50세 이상	(27)	11.1	48.1	18.5	22.2	22.2	59.3	2.5
전통무예 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18.2	40.9	20.5	20.5	20.5	59.1	2.4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3.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100.0	2.0

[표 10] 현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생각 _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대한 세부시책이 마련 [문4]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Top2	Bottom 2	평균
▣ 전체 ▣	(47)	21.3	36.2	27.7	12.8	2.1	14.9	57.4	2.4
성 별									
남 성	(46)	21.7	37.0	28.3	10.9	2.2	13.0	58.7	2.3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4.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
30대	(4)	25.0	50.0	0.0	25.0	0.0	25.0	75.0	2.3
40대	(15)	20.0	33.3	33.3	13.3	0.0	13.3	53.3	2.4
50세 이상	(27)	22.2	37.0	25.9	11.1	3.7	14.8	59.3	2.4
전통무예 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22.7	36.4	25.0	13.6	2.3	15.9	59.1	2.4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3.0
잘 모름	(1)	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11] 전통무예진흥법 개선사항 - 1순위 [문4-1]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	전통무예 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 방안 수립
▣ 전체 ▣	(47)	51.1	27.7	17.0	4.3
성 별					
남 성	(46)	52.2	26.1	17.4	4.3
여 성	(1)	0.0	100.0	0.0	0.0
연 령					
20대	(1)	0.0	100.0	0.0	0.0
30대	(4)	50.0	50.0	0.0	0.0
40대	(15)	53.3	26.7	13.3	6.7
50세 이상	(27)	51.9	22.2	22.2	3.7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50.0	27.3	18.2	4.5
보통임	(2)	50.0	50.0	0.0	0.0
잘 모름	(1)	100.0	0.0	0.0	0.0

[표 11] 전통무예진흥법 개선사항 - 2순위 [문4-1]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통무예 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 방안 수립
▣ 전체 ▣	(47)	44.7	27.7	19.1	8.5
성 별					
남 성	(46)	45.7	26.1	19.6	8.7
여 성	(1)	0.0	100.0	0.0	0.0
연 령					
20대	(1)	0.0	100.0	0.0	0.0
30대	(4)	50.0	50.0	0.0	0.0
40대	(15)	46.7	26.7	20.0	6.7
50세 이상	(27)	44.4	22.2	22.2	11.1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43.2	29.5	18.2	9.1
보통임	(2)	50.0	0.0	50.0	0.0
잘 모름	(1)	100.0	0.0	0.0	0.0

[표 11] 전통무예진흥법 개선사항 - 3순위 [문4-1]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	전통무예 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 방안 수립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 전체 ▣	(47)	38.3	29.8	19.1	12.8
성 별					
남 성	(46)	39.1	28.3	19.6	13.0
여 성	(1)	0.0	100.0	0.0	0.0
연 령					
20대	(1)	0.0	0.0	0.0	100.0
30대	(4)	50.0	50.0	0.0	0.0
40대	(15)	40.0	33.3	20.0	6.7
50세 이상	(27)	37.0	25.9	22.2	14.8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34.1	31.8	20.5	13.6
보통임	(2)	100.0	0.0	0.0	0.0
잘 모름	(1)	100.0	0.0	0.0	0.0

[표 11] 전통무예진흥법 개선사항 - 4순위 [문4-1]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통무예 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 방안 수립	전통무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전체 ▣	(47)	57.4	17.0	17.0	8.5
성 별					
남 성	(46)	58.7	15.2	17.4	8.7
여 성	(1)	0.0	100.0	0.0	0.0
연 령					
20대	(1)	100.0	0.0	0.0	0.0
30대	(4)	50.0	50.0	0.0	0.0
40대	(15)	53.3	20.0	20.0	6.7
50세 이상	(27)	59.3	11.1	18.5	11.1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54.5	18.2	18.2	9.1
보통임	(2)	100.0	0.0	0.0	0.0
잘 모름	(1)	100.0	0.0	0.0	0.0

[표 13] 전통무예 정의규정에 택견, 마상무예, 십팔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 [문5]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Top2	Bottom 2	평균
▣ 전체 ▣	(47)	23.4	19.1	12.8	14.9	29.8	44.7	42.6	3.1
성 별									
남 성	(46)	23.9	19.6	13.0	15.2	28.3	43.5	43.5	3.0
여 성	(1)	0.0	0.0	0.0	0.0	100.0	100.0	0.0	5.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
30대	(4)	25.0	50.0	0.0	0.0	25.0	25.0	75.0	2.5
40대	(15)	40.0	20.0	6.7	6.7	26.7	33.3	60.0	2.6
50세 이상	(27)	14.8	14.8	14.8	22.2	33.3	55.6	29.6	3.4
전통무예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25.0	20.5	13.6	11.4	29.5	40.9	45.5	3.0
보통임	(2)	0.0	0.0	0.0	100.0	0.0	100.0	0.0	4.0
잘 모름	(1)	0.0	0.0	0.0	0.0	100.0	100.0	0.0	5.0

[표 14] 전통무예진흥법의 실효성 평가를 통한 재정비의 필요성 [문6]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Top2	Bottom 2	평균
▣ 전체 ▣	(47)	6.4	4.3	12.8	31.9	44.7	76.6	10.6	4.0
성 별									
남 성	(46)	6.5	4.3	13.0	30.4	45.7	76.1	10.9	4.0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4.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
30대	(4)	0.0	0.0	25.0	50.0	25.0	75.0	0.0	4.0
40대	(15)	6.7	0.0	6.7	20.0	66.7	86.7	6.7	4.4
50세 이상	(27)	7.4	7.4	11.1	37.0	37.0	74.1	14.8	3.9
전통무예 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6.8	4.5	9.1	34.1	45.5	79.5	11.4	4.1
보통임	(2)	0.0	0.0	100.0	0.0	0.0	0.0	0.0	3.0
잘 모름	(1)	0.0	0.0	0.0	0.0	100.0	100.0	0.0	5.0

[표 15]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지원과 진흥을 위한 기준을 전통무예 진흥법에 세부규정 마련하는 것에 대한 생각 [문7]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Top2	Bottom 2	평균
▣ 전체 ▣	(47)	4.3	6.4	19.1	40.4	29.8	70.2	10.6	3.9
성 별									
남 성	(46)	4.3	6.5	19.6	39.1	30.4	69.6	10.9	3.8
여 성	(1)	0.0	0.0	0.0	100.0	0.0	100.0	0.0	4.0
연 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
30대	(4)	0.0	25.0	0.0	75.0	0.0	75.0	25.0	3.5
40대	(15)	6.7	6.7	6.7	33.3	46.7	80.0	13.3	4.1
50세 이상	(27)	3.7	3.7	25.9	40.7	25.9	66.7	7.4	3.8
전통무예 진흥법 인지정도									
잘 알고 있음	(44)	4.5	6.8	18.2	40.9	29.5	70.5	11.4	3.8
보통임	(2)	0.0	0.0	50.0	50.0	0.0	50.0	0.0	3.5
잘 모름	(1)	0.0	0.0	0.0	0.0	100.0	100.0	0.0	5.0